



Women Friendly Seoul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공원, 女幸아파트, 女幸기업 매뉴얼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omen Friendly Seoul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공원, 女幸아파트, 女幸기업 매뉴얼

2009. 9.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시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그 동안 여성은 도시공동체의 당당한 주역이면서도 도시환경 주체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환경은 주로 양적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도시의 모습은,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느끼고 만족하는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중요한 주체이면서도 여전히 약자인 여성에게 편안함을 주는 도시공간은 공공이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며, 여성이 행복해졌을 때 그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도입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 5개 영역 중 ‘안전한 서울’과 ‘편리한 서울’은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도시 공간 이용 시 안전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여성 친화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관리하기 위한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여행매뉴얼>은 ‘여행아파트’ ‘여행공원’ ‘여행 기업’ 조성에 필요한 여행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항목별 도입배경과 목표 그리고 여성 친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공원은 공원 조성 시 부서나 지역에서 단편적으로 시행하던 유사사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통합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행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을 통해 항목별 도입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세부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여성친화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기업은 여성의 양적 고용확대 뿐 아니라 고용의 질 향상,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매뉴얼의 특징은 여성친화적이고 여성성이 부각되는 ‘여성의 삶 · 마음 · 꿈 · 감성’을 테마로 선정, 각 시설기준에서 이들 테마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모색한 것입니다.

편의성(Convenience)이 확대된 도시 속에서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고 ‘여성의 마음’이 모든 도시민을 배려(Consideration)하며 ‘여성의 꿈’이 도시 어느 곳에서나 안전(Safety)하게 지켜짐은 물론 ‘여성의 감성’으로 모두가 쾌적함(Amenity)을 누리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본 매뉴얼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매뉴얼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이재림 대표님, 안산1대학 이순희 교수님, 충북대학교 이주나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안재희 박사님과 본 재단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



女幸공원 女幸아파트 女幸기업 매뉴얼

1. 여성이 행복한 공원

女幸공원, 女幸아파트 기본방향 및 키워드 6

여행공원 가이드라인 8

여행공원 평가기준표(필수) 9

여행공원 평가기준표(선택/권고) 10

여행공원 매뉴얼(세부규정) 16

2.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여행아파트 가이드라인 44

여행아파트 평가기준표(필수) 45

여행아파트 평가기준표(선택/권고) 46

여행아파트 매뉴얼(세부규정) 57

3. 여성이 행복한 기업 (시설/운영)

女幸기업 기본방향 및 키워드 100

여행기업 가이드라인 101/112

여행기업 평가기준표(필수) 102/113

여행기업 평가기준표(선택/권고) 103/114

여행기업 매뉴얼(세부규정) 104/116

기본방향 및 키워드

| 기본방향 |

-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여성성이 반영되는 고품질의 공공성 추구
- 여성의 도시환경 만족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여행도시의 정착

| 여행키워드 |

C.O.S.Y.女幸

여행의 인지성과 여성성에 관한 테마

편 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도시

- 여성의 편의성 확보
- 사람 중심의 도시 시설물 정비를 권장
- 필요공간의 효율성과 질서 확립

배 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도시

- 이동약자를 생각하는 도시환경 조성
- 공공 교류기능의 확대
- 도시기능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

안 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도시

-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환경의 안정성 확보
- 편익에 따른 위해 및 장애 요소 제거
- 범죄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쾌 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도시

- 경관과 시설요소들의 조화로운 구성
-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
-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

1

여성이 행복한 공원

여행공원 가이드라인

여행공원 평가기준표(필수)

여행공원 평가기준표(선택/권고)

여행공원 매뉴얼(세부규정)



여성이 행복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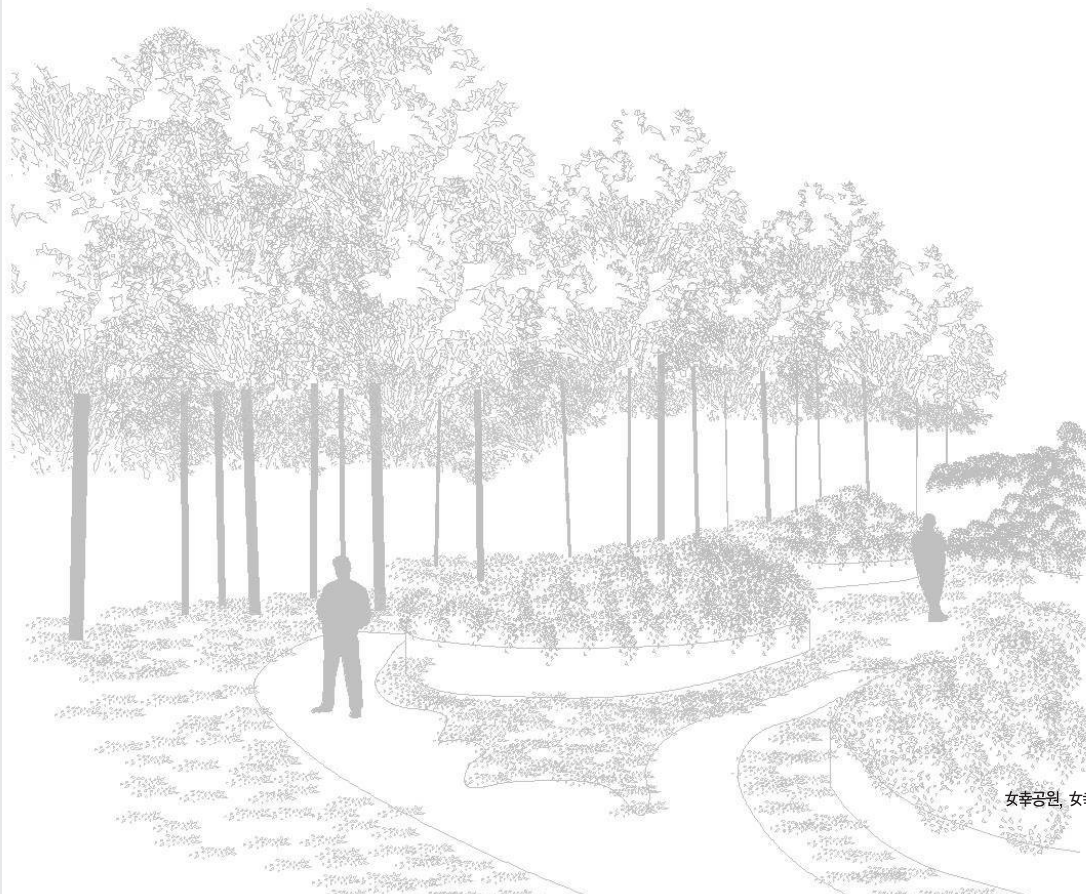
구분	가이드라인	등급
1.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공원	1. 여성친화거리 조성 2.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3.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4.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5. 여성참여 프로그램 마련	필수/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권고
2.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공원	1.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2.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 3.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 및 운동시설 설치 4. 편의시설 갖추기 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선택 선택 선택/권고 필수/선택 선택
3.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공원	1. 안전한 시야 확보 2.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3. 사고방지기능 강화 4. 방범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5. 안전지역의 지정	필수/선택 필수/선택 선택 선택 권고
4.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공원	1. 환경의 쾌적성 증진 2. 공간의 쾌적성 증진 3. 친환경 계획 도입 4.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5. 애완견 보호 구역 마련	선택 선택/권고 선택/권고 선택 권고

여성이 행복한 공원(소규모 10만 m² 미만)

평가기준표(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
편의	1.1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거리 조성			필수	꽃길, 휴게벤치, 가로등, 음악스피커 등 반영
배려	2.4	편의시설 갖추기	휴게공간의 고려			필수	간격 200m 이내 휴게의자설치
안전	3.1	안전한 시야 확보	조경물의 시야 확보			필수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조성
			휴식공간의 시야 확보			필수	벤치,정자 부근 개방감 유지
	3.2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CCTV설치(여성친화산책로 및 주요 시설물)			필수	등산로입구 포함 CCTV 적정위치 다수 설치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필수	적정위치 다수 설치
			외부조도			필수	가로등 간격 30m이내 또는 6~15Lux 이상 단, 여성친화산책로는 20m 이내 또는 15Lux 이상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여성이 행복한 공원(소규모 10만 m² 미만)

평가기준표(선택/권고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1.1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모두 반영한 경우	일부분 반영	미반영	선택	폭 1.5m 이상, 이음새 5mm이내, 종단기울기 1/120이하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내부보행로와 일체감 있는 연결	일부연결	미반영	선택	
			보행의 연속성 확보	연속성 유지	일부연속	미반영	선택	
	1.2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여행주차장 인증 프로그램 적용	인증 완료 또는 가이드라인 모두 적용	일부분 반영	미반영	선택	여행주차장 매뉴얼 참조
	1.3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행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인증 완료 또는 가이드라인 모두 적용	일부분 반영	미반영	선택	여행화장실 매뉴얼 참조
	1.4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휴게공간에 연계 어린이시설 감시가능		미확보	선택	
공원의 안내표시판			충분한 안내표시	안내표시 불충분	미반영	선택		
배려	2.1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학습공간 별도 설치	일부분 인접	미반영	선택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학습장 설치하고 연계		미반영	선택	
			어린이놀이터의 주보행로 인접	자연스런 인접		미반영	선택	
	2.3	운동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설치	공중전화	미설치	선택	
	2.4	편의시설 갖추기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자판기의 설치	설치	보통	미설치	선택	
			공중전화의 설치	긴급통화 겸용 설치		미설치	선택	
	2.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조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주제에 맞는 특성 화된 공간확보		미반영	선택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제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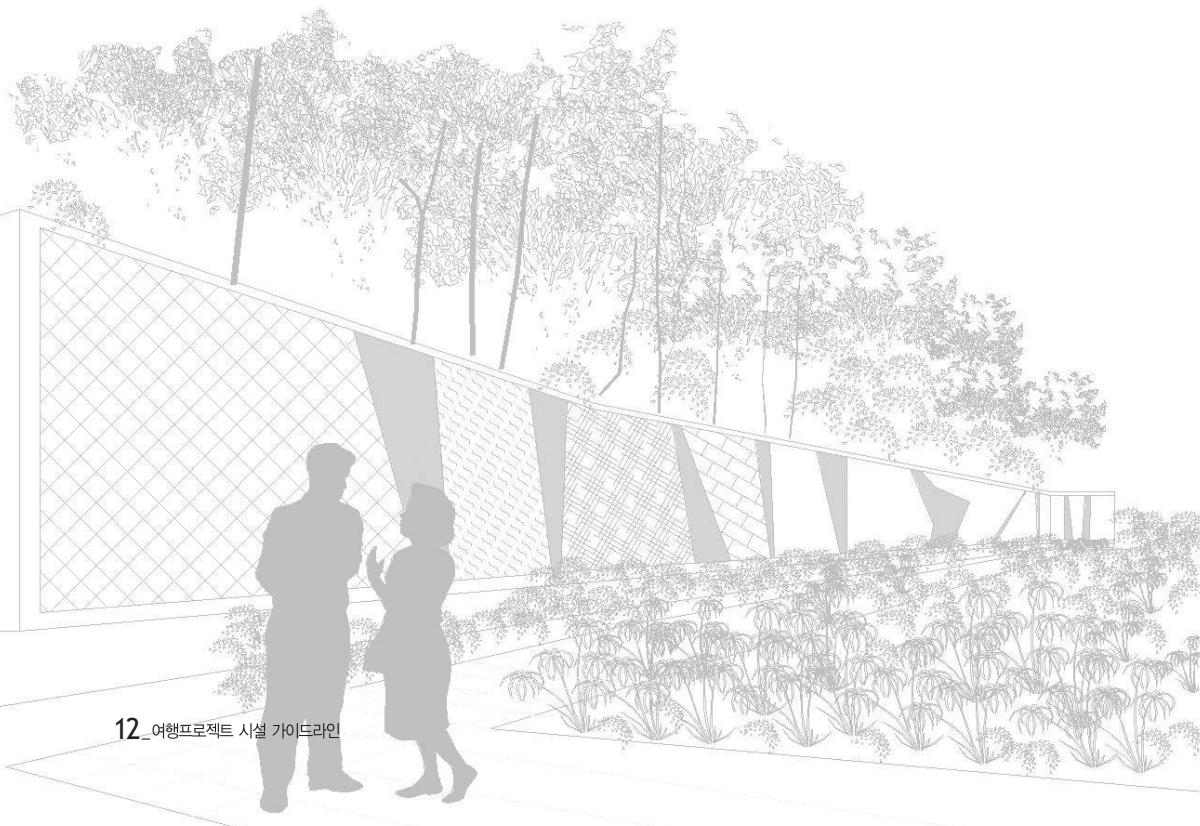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안전	3.1	안전한 시야 확보	시설물의 시야 확보	관리사무소 등 시설주변 개방감	일부가림	미확보	선택	
			사각지대의 제거	제거	접근금지 장치 설치	미반영	선택	
	3.2	범죄예방 설계 적용 (CPTED)	시설물의 감시 기능	관리사무소의 적절한 위치	일부 도입	미반영	선택	
	3.3	사고방지 기능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모든 시설에 적극적인 도입		미반영	선택	
			경사로 안전	경사도유지(1/120이하)	경사도유지 (1/8-1/120이하)	1/80이상	선택	
			시설물의 안전	안전		위험성 내포	선택	법규기준검토 및 시각적 안전도 평가
	3.4	방법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주·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구축하고 파출소와 연계		미반영	선택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관리소 다중설치	관리소 설치	미설치	선택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구급약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상구급약 비치	미반영	선택	
	3.5	안전지역의 지정	인근지역의 안전지역 지정 및 운영	지정 및 효율적 운영	안전지역 지정	미반영	권고	
쾌적	4.1	환경의 쾌적성 증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기존의 생태적 요소활용		미반영	선택	개천, 연못, 비오톱 등
			금연 권장공원 지정	금연 표지판 설치 및 흡연구역 설치	금연표지판만 설치	미반영	선택	
	4.2	공간의 쾌적성 증진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쓰레기 관리동선 별도마련	위치선정 양호	미반영	선택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시설물의 디자인 양호	보통	미흡	선택	
			공원주변의 쾌적성	쾌적	보통	미흡	선택	
	4.3	친환경 계획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투수성블록 등 친환경재료 사용	일반도로	페타이어 등 유해 재료사용	선택	
	4.4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조명, 냉난방 등 자동조절 기능사용		미반영	선택	제어 프로그램 고안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LED조명, 절수변기 등 사용		미반영	선택	
			옥상 및 벽면 녹화	옥상, 벽면 모두 녹화	일부만 녹화	미반영	선택	

여성이 행복한 공원(대규모 10만㎡ 이상)

평가기준표(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
편의	1.1	여성친화거리 조성			필수	꽃길, 휴게벤치, 가로등, 음악스피커 등 반영
배려	2.4	편의시설 갖추기			필수	간격 200m 이내 휴게의자설치
안전	3.1	안전한 시야 확보			필수	조경물의 시야 확보
					필수	휴식공간의 시야 확보
					필수	시설물의 시야 확보
					필수	사각지대의 제거
	3.2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필수	CCTV설치(여성친화산책로 및 주요 시설물)
					필수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필수	외부조도 가로등 간격 30m이내 또는 6~15Lux 이상 단, 여성친화산책로는 20m 이내 또는 15Lux 이상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여성이 행복한 공원(대규모 10만 m² 이상)

평가기준표(선택/권고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1.1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모두 반영한 경우	일부반영	미반영	선택	폭 1.5m 이상, 이음새 5mm이내, 종단기울기 1/120이하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내부보행로와 일체감 있는 연결	일부연결	미반영	선택	
		보행의 연속성 확보	연속성 유지	일부연속	미반영	선택	
	1.2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여성우선주차장의 지정	전체의 20%이상 130LUX이상 조도확보	20%미만	미반영	선택	지상·비상벨 지하: CCTV, 비상벨
	1.3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행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인증 완료 또는 가이드라인 모두 적용	일부반영	미반영	선택	여행화장실 매뉴얼 참조
	1.4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유모차 대여	대여하는 경우		미반영	선택	
		미아 보호시설 및 수유실 설치	두가지 모두 설치	한가지만 설치	미반영	선택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휴게공간에 연계 어린이시설 감시가능		미확보	선택	
		정보 이용시설의 확충	설치		미반영	선택	
		공원의 안내표시판	충분한 안내표시	안내표시 불충분	미반영	선택	
	1.5 여성참여 프로그램 마련	여성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원안내 등 자원봉사 운영		미반영	선택	
		여성참여 관리 시스템 도입	방문자센터 등 직접참여		미반영	권고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배려	2.1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학습공간 별도 설치		미반영	선택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학습장 설치하고 연계		미반영	선택	
			어린이놀이터의 주보행로 인접	자연스런 인접	일부만 인접	미반영	선택	
	2.2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	주변과의 연계성	접근용이		접근불편	선택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2.3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 및 운동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체육시설과 연계성	연계		미반영	권고	
	2.4	편의시설 갖추기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자판기의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공중전화의 설치	긴급통화 전용 설치	공중전화 설치	미설치	선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간 확보 (내부 및 외부)	공간확보 (외부만)	미확보	선택	
	2.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문화생활 또는 나무가꾸기 등)		미반영	선택	
			조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주제에 맞는 특성 화된 공간확보	보통	미반영	선택	
안전	3.2	범죄예방 설계 적용 (CPTED)	시설물의 감시 기능	관리사무소의 적절한 위치		미반영	선택	
	3.3	사고방지기능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모든 시설에 적극적인 도입	일부 도입	미반영	선택	
			주체별 이동동선의 접근성 (자동차, 자전거, 사람)	출입구 분리하고 접근양호	접근양호	접근불편	선택	
			공원내 보행자 우선 동선 마련 (보 · 차분리)	적용		미적용	선택	
			경사로 안전	경사도유지(1/120이하)	경사도유지 (1/8-1/120이하)	1/80이상	선택	
			시설물의 안전	안전		위험성 내포	선택	법규기준검토 및 시각적 안전도 평가
	3.4	방범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주 · 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구축하고 파출소와 연계		미반영	선택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관리소 다중설치	관리소 설치	미설치	선택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구급약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상구급약 비치	미반영	선택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쾌적	4.1 환경의 쾌적성 증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기존의 생태적 요소활용		미반영	선택	개천, 연못, 비오톱 등
		금연 권장공원 지정	금연 표지판 설치 및 흡연구역 설치	금연표지판만 설치	미반영	선택	
	4.2 공간의 쾌적성 증진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쓰레기 관리동선 별도마련	위치선정 양호	미반영	선택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시설물의 디자인 양호	보통	미흡	선택	
		공원주변의 쾌적성	쾌적성	보통	미흡	선택	
		야간경관을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	특성화된 디자인	일반 디자인	미반영	권고	
	4.3 친환경 계획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투수성블록 등 친환경재료 사용	일반도로	페타이어 등 유해 재료사용	선택	
		신재생 에너지 사용	태양열, 중수도 등의 활용		미반영	권고	
	4.4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조명, 냉난방 등 자동조절 기능사용		미반영	선택	제어 프로그램 고안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LED조명, 절수변기 등 사용		미반영	선택	
		옥상 및 벽면 녹화	옥상, 벽면 모두 녹화	일부만 녹화	미반영	선택	
	4.5 애완견 보호 구역 마련	애완견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	설치		미반영	권고	
		애완견 동반 산책로 지정	지정		미반영	권고	



1.1 여성친화거리 조성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친화거리」란 공원 내 여성에게 쾌적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된 거리를 말하며, 이 거리 안에는 여성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 산책로」를 일부 또는 전체에 조성한다. 여행공원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일반 공원과는 달리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여성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산책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여성에게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일부에 여성친화거리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 거리 안에는 여성친화산책로 등 차별화된 시설들을 설치한다.

규정

여성친화거리 조성

- 여행공원에는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하여 꽃심기, 적절한 간격의 휴게벤치, 부드러운 빛의 가로등 및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등을 설치한다.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 여성친화거리에는 폭 1.5m 이상, 이음새 5mm이내, 종단기울기 1/120이하의 여성친화산책로를 전부 또는 일부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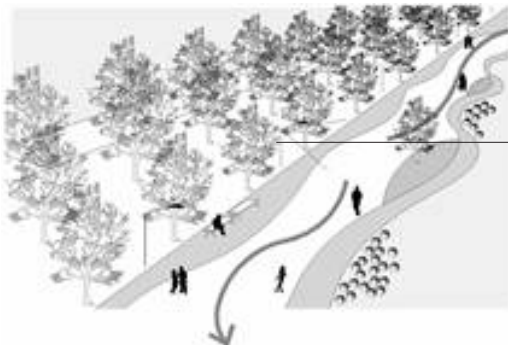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 공원 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의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이를 여성에게 친화적인 보행로로 구성한다.
- 이와 같은 여성친화적 보행로는 공원 여성친화산책로와 일체감을 주어 별도의 표지 없이도 연속성이 유지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보행의 연속성 확보

- 여성친화산책로는 순환로 형식으로의 조성을 권장한다.
- 공원 내부의 단차를 최소화하고 수직 이동 시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활용한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높이는 160cm 이하, 너비는 300cm 이상을 권장한다.
-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미만이 되도록 권장한다.

예시



CCTV설치

- 공원내 여성친화 거리 조성
(여성친화산책로 및 휴식공간 등 설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1.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운전자들은 아동을 동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운전자들의 편의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이 편리하고 보행동선을 최소화한 여성친화 주차장을 공원 내부 또는 근처에 마련해야 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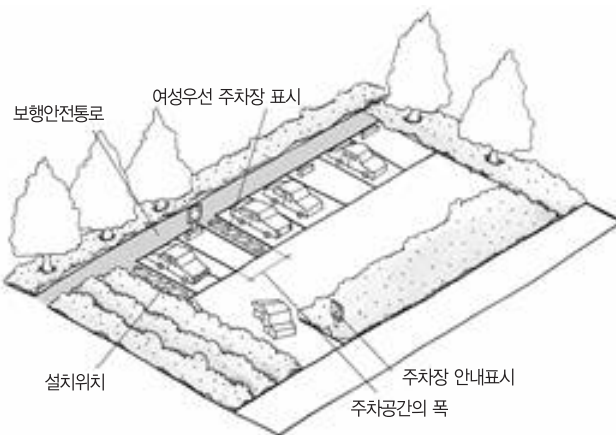
여행공원 내부 또는 인근 주차장(타시설 부속 또는 노외주차장과 공의 공동사용 포함)에 女幸주차장이나 여성우선 주차면이 있는 주차구역 등을 마련하여 공원을 이용하려는 여성들의 주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을 높인다.

규정

여성우선주차장의 지정

- 공원 주차장 내부 또는 인근에 여성우선주차장을 20%이상 확보한다.
- 공원 내부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때는 공용주차장등의 인근 주차장을 공의용 주차장으로 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의이용자용 여성우선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한다.
-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은 해당 시설물과 가까운 곳에 지정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유리하도록 한다.
- 여성우선주차장은 공의 입구와 가까운 곳 또는 공의 출입 보행로와 인접하여 지정한다.
- 지하주차장인 경우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지상주차장인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 여성우선주차장에는 주야간 130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 여성친화산책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예시



●공원 내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예시



1.3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질적 개선과 화장실 사용시간이 긴 여성 사용자들을 위해 여성편의 공중화장실(여행화장실)을 설치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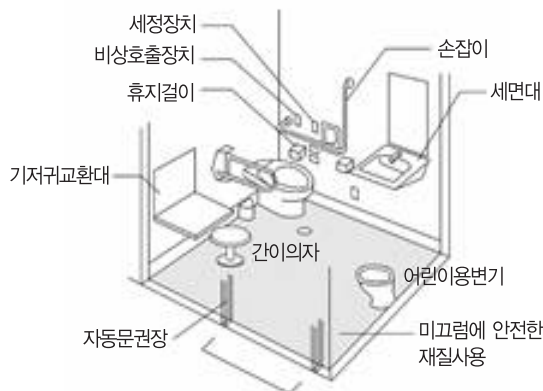
근린공원, 소공원, 테마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은 여성친화형 화장실(여행화장실)로 설치하거나 적극 개선하여 활용한다.

규정

「女幸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시설 규정 및 시설 규모 등은 「女幸화장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女幸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한다.
- 기존 화장실의 리모델링 시 「女幸화장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女幸화장실로 개선하도록 한다.

예시



● 다목적 화장실



● 휴게공간 확보(간이화장대 설치)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1.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및 여성편의시설들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또한 공원 내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알리는 충분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모든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한다.

목표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규정

유모차 대여

- 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나 방문자센터 내부 또는 인근에 유모차 대여 장소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 유모차 대여 시설의 규모는 공원 이용객을 감안 하여 산정하고 대여 대수를 충분히 확보한다.

미아 보호시설 및 수유실 설치

- 관리사무소 및 방문자센터를 설치하는 공원에는 미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여행화장실 또는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에 별도의 수유실을 마련한다.

어린이시설과 휴게 공간의 연계성 확보

- 공원 내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은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연계성을 확보한다.
- 어린이 놀이터 등의 어린이시설은 어른들의 보호 관찰이 편리한 구조와 위치로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 이용시설의 확충

- 무인정보 검색대(인터넷이 가능한 구조)를 관리사무소 또는 공원 내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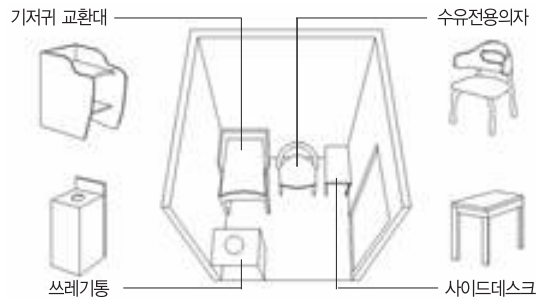


1.4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공원의 안내 표지판

- 공원에는 이용이 편리한 종합 안내도를 일정거리 마다 설치(최소 2개소 이상)한다. 안내판에는 지역의 주소와 위치 등을 기록한다.
- 종합 안내도에는 현재의 위치와 공원의 여성편의시설 및 인근 서비스시설의 위치, 시설 규모 등을 표기한다.
-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따로 표기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종합 안내도에는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위치,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 표시판은 정확한 정보표시 및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간결하고 미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한다.

예시



●공원내 수유실 설치 예시



●공원내 유모차 대여 서비스 실시



●공원 안내판 설치 예시도



여성참여 프로그램 마련 1.5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공원조성 시기에 맞추어 인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여행공원참여모임을 구성하고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목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성의 감성이 고려된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참여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운영한다.

규정

여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공원 안내나 외국어 통역, 주차대행 서비스 등 유료 혹은 자원봉사 인력에 여성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의 여가선용과 공원 활용도를 높인다.

여성참여 관리 시스템 도입

- 공원의 여성친화성을 증진시키고 공공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센터나 방문자센터의 운영관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이상의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여성의 감성과 의견이 반영되는 여성친화 공원이 되도록 한다.

예시



●공원 내 외국인 통역서비스



2.1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현재 도시의 어린이들은 주어진 학업 이외에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학습경험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러한 기회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이 모두 이용하는 여행공원의 경우 부모와의 학습기회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심으로 아이들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여행공원 내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및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규정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 근린공원 등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장을 놀이공간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단 교육기능을 가지는 놀이공간의 경우는 학습장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되도록 한다.
- 자연학습장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형 학습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 학습장(모험공간, 자연체험공간 등)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2가지 이상의 체험학습 공간을 구성한다.
- 공원내 학습장과 놀이공간은 안전을 위해 도로와 떨어진 곳에 조성한다.
- 학습장 설치의 안전기준은 「도시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한다.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 주변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장을 관리 운영한다.
- 학교 수업시간 및 방과후 활동을 우선 배려하여 교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녹지형 공원에는 자연학습장과 더불어 주민참여 텃밭 또는 재배장을 설치 운영(무로임대 혹은 주민 공동분배 방식 등)하도록 권장한다.
- 작물 재배뿐 아니라, 수경식물, 가축기르기 체험등 다양한 학습이 되도록 조성하고 활용한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 2.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중 하나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 내부에도 자전거로 공원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자전거 보관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목표

공원이용자가 자전거 거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배려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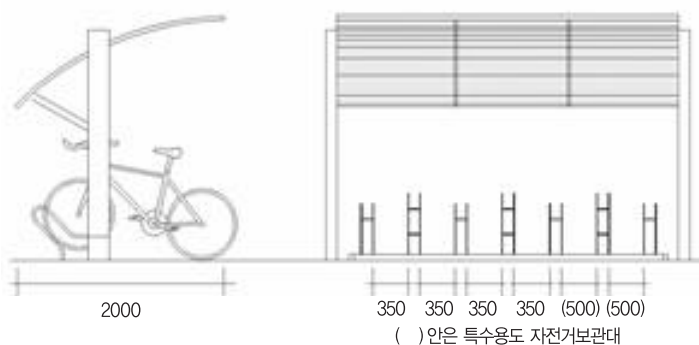
주변과의 연계성

- 공원 주변의 자전거도로와 적극 연계하여 공원 이용 및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공원 내부로의 자전거 도로 인입은 자제한다.
(단, 도시지역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소공원은 제외)
- 공원 외곽에 자전거 순환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 외곽부가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자전거 보관소는 해당 건물 주변에 설치하도록 한다.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대수는 자전거 통행 용량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 설치대수중 특수용도의 자전거보관을 위한 거치대를 10~20%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예시



●공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예시도



2.3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 및 운동시설 설치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최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스포츠센터의 조성과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공원에는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거나 노후화된 운동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시설에도 생활체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여성 및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여행공원 내 다양한 운동기구 및 소운동장 등 시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운동시설 설치

- 인근에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없는 경우, 공원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운동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체육시설과 연계성

- 인근의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공원과 연계하여 접근이 용이하게 하며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편의시설 갖추기 2.4

| 적용등급 필수 /선택 |

도입배경

도심 내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 근린공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공원이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갖춘 도심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목표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도심의 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음수대, 자판기 등 기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규정

휴게공간의 고려

- 100~200m 이내의 일정거리마다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휴게시설 또는 휴게공간은 사람의 이용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집중 설치한다.
- 의자는 4인 이용 기준으로 2인용과 1인용을 혼합하여 설치한다.
- 휴게공간의 의자배치는 대면형으로 하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이격시킨다.
- 정자의 위치는 공원 내 주변을 살피기에 좋은 곳으로 하며 정자로 가는 길은 미끄럼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마련한다.
- 정자는 공원 테마에 맞는 디자인을 고안하도록 하며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 공원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음수대를 설치한다.
- 음수대의 설치는 성인용뿐만 아니라 어린이용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자판기의 설치

- 음수대의 관리는 「식품위생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 공원에 매점이 없는 경우 적절한 장소에 자판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판기는 음료수뿐만 아니라 위생용품 등 필요한 제품을 적절히 선정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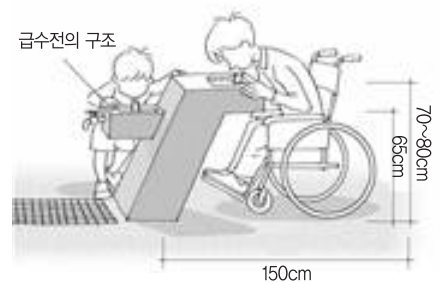
공중전화의 설치

- 긴급통화를 겸한 공중전화 부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전화 부스는 시야에 방해받지 않고 사방을 확인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예시



●공중전화 및 정보검색대 설치 예시



●급수대 설치



2.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현대 사회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는 삶의 질 평가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휴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공원은 커뮤니티 기능이 미비하고 콘텐츠도 부족하며 물리적인 공간의 확보도 용이치 않다. 따라서 여행공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공원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원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확대 시킨다.

규정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여성 중심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결속을 돕는 공간을 마련한다.
- 커뮤니티 시설은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의 내부 또는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의 수월함을 보장한다.
- 소광장을 조성하여 야외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며 바자회, 휴일장터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한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 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한다.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 등)를 유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 공원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인 관리의 수목을 지정해 줌으로써 공원 관리의 수월함과 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수목 지정은 주민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 주민참여 조경시설을 설치 구획하고 주민의 참여로 조경시설을 관리하게 한다.

조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 소공원은 이용자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에 충분한지, 여성친화적인 요소(1.1 여성친화산책로 설치 등)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 어린이 공원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시설이 충분한지, 여성친화적인 요소(1.4 어린이 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등)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성친화적인 요소(2.4 휴게공간 고려 등)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제공원인 경우에는 각각 주제에 목적하는 바가 부합되는지, 여성친화적인 요소(1.5 여성참여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 도입)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안전한 시야 확보 3.1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공원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며 이용빈도도 매우 높지만 수목이나 시설물에 의한 시야차단은 여성들에게 큰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실제 공원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범죄의 대부분은 시야가 차단된 후미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원내의 곳곳을 시야에 노출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목표

공원내의 시야 차단요소를 제거하여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원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규정

조경물의 시야 확보

- 보행로변 조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지 작업을 통하여 일정한 시야를 확보하고 임야가 범인의 은신처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수목 밀식지대는 간벌을 통하여 자연적 가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 공원 외곽 경계부 담장은 최소한의 영역 구분만 가능하도록 낮은 관목을 심는다.
- 가로변 수목에 대한 관리로 넓은 시야선을 갖도록 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
- 예리한 코너, 높은 담장 등은 지양하고 낮은 담과 정돈된 관목과 같이 사용자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시설물로 계획한다.
- 수목 설계시 분명한 시야선이 확보되어야 하는 구간은 개방된 수간(樹間)을 형성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분명한 시야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마운딩은 금지한다.
- 기타사항은「안전을 위한 조경설계 지침」을 적용하여 공원 설계에 반영한다.

휴식공간의 시야 확보

- 휴식시설(벤치, 정자 등)은 공원 중앙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 휴식시설은 사방에서 시선이 차단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휴식시설 주변 조경과 수목 식재시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50~70cm)의 수종을 선택한다.
- 휴식시설은 최소 8인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규모로 하며 단독으로 배치된 벤치의 설치 지양한다.



3.1 안전한 시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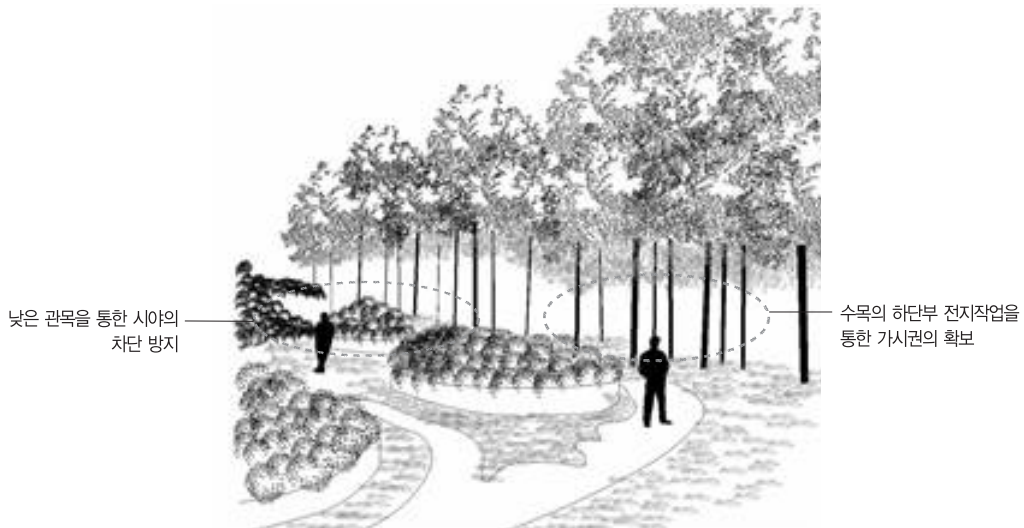
시설물의 시야 확보

- 가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 동선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게 하고 허가 되지 않은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
- 공원의 관리사무소 위치는 여성친화산책로 등의 주요시설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 한다.
- 공원 각지에서 관리사무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선차단을 최소화 한다.

사각지대의 제거

- 사각지대 개선 차원에서 필요 없는 구조물은 과감히 철거한다.

예시



●자연적인 가시권의 확보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3.2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경찰에 의존한 범죄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간을 정비하여 범죄 유발 요인을 억제함은 물론 공원 조성 시 범죄의 취약공간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취약지역의 발생을 막는 범죄 예방설계가 필수적이다.

목표

공원 조성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CPTED)기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조정 계획 등에 접목함으로써 공원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규정

CCTV 설치 (여성친화산책로 및 주요 시설물)

- 공원 주차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 CCTV의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친화산책로에는 CCTV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넓은 장소는 2대 이상 같은 곳을 비추게 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고립지역 개선 차원에서 등산로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한다.
-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의 설치를 권장한다.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 보행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시설물에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 인터폰은 주간에는 관리사무소, 야간에는 인근 파출소로 연결되게 한다.
- 비상벨은 현장 발음은 물론 인근 파출소로 연결되도록 한다.
- 공원 내 설치된 CCTV는 1개소 이상의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비추도록 한다.

외부조도

- 공원내 가로등은 높이 4m미만으로 보행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한다.
- 가로등은 간격 20~30m 이내 또는 6~15LUX(바닥위 85cm 측정값 : KS조도기준)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 여성친화산책로 및 주요시설의 가로등은 20m이내 또는 15~3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감시 기능

- 관리사무소는 공원 내 감시가 용이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3면 이상의 창을 통하여 주변을 관리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공원 출입구 또는 공원 내 사람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공원 각지에서 관리사무소가 잘 보일수 있도록 시야 차단을 최소화 한다.
-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지침을 준수한다.
- 동선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허가되지 않은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한다.
- 가시권이 확보된 시설물의 배치를 통해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3 사고방지기능 강화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공원은 지역의 중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고 이용하는 곳으로써 공원 이용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표

공원 시설물에 사고방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도록 한다.

규정

공원내 보행자 우선 동선 마련 (보·차분리)

- 공원내 동선은 기본적으로 보차분리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서비스 차량의 접근 동선 등) 분리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이용에 제한을 둔다.
- 보행로와 차로는 단차를 두어 차량의 보행로 간섭을 방지한다.
- 공원 내 보행로, 산책로에 대한 독립성을 향상시킨다.
-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는 분리하도록 하며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분리대를 설치하여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 보행로의 단차를 없애고 연속성을 유지한다.
- 보행로 및 산책로의 경사는 1/18 이하로 설치한다(여성친화산책로는 1/20이하 설치).
- 보도와 산책로의 최소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길 옆에 안전헬스 또는 난간을 설치하여 유모차 또는 휠체어의 안전을 도모한다.
- 여성친화산책로의 유효폭 등은 女幸길 규정을 적용한다(女幸길 1.1 등 항목 참조).
- 공원 출입문의 유효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여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건물 출입구의 단차를 없애고 건물 기반부를 최대한 낮게 설계하여 경사로를 최소화 한다.
- 출입문의 문턱은 제거하여 유모차 및 휠체어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 전반적인 공원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공간)의 적용을 권장한다.



사고방지기능 강화 3.3

주체별 이동동선의 접근성 (자동차, 자전거, 사람)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 설치하여 입구에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한다.
- 보행자의 입구는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등에 가까운 곳을 지정하고 차량 및 자전거로부터 분리시킨다.
- 자동차의 공원 내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볼라드 설치).
- 자전거의 출입은 자전거보관소와 연계하도록 하며 보행자의 진입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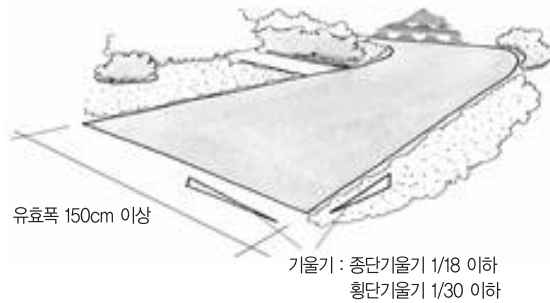
경사로 안전

-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도가 1/120이하가 될 것을 권장한다.
- 적어도 1/80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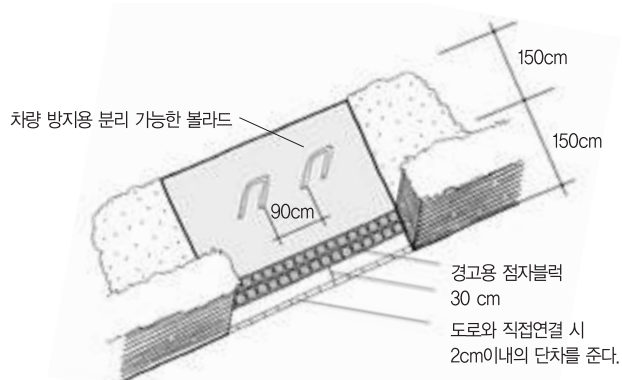
시설물의 안전도

- 공원의 각종 시설물은 사고위험이 없도록 「도시공원법」등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예시



●공원내 산책로 조성 예시도



●공원 출입구 조성 예시도



3.4 방법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공원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합화 되면서 공원의 관리에 좀 더 효율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 및 재해 등의 사용자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원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하여 보다 친숙하고 안전한 공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표

방법 및 방재에 대한 관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규정

주·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 관리사무소와 주변 파출소와 연계하여 통합 방법 및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간, 야간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한다.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에는 관리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감시기능과 안전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 설치되는 통합관리소나 방문자센터는 공원출입구 또는 사람의 이용이 많은 곳에 위치하여 안전에 대한 종합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통합관리소에 부속된 관리실이나 경비실은 공원내부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장소에 분산 배치한다.
- 관리소는 3면 이상의 창을 통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하도록 한다.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 관리실 내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여 공원 내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전지역의 지정 3.5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도심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가로공원, 생활밀착형소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공원들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지만 유지관리의 취약점으로 인해 야간 범죄의 동기부여 장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지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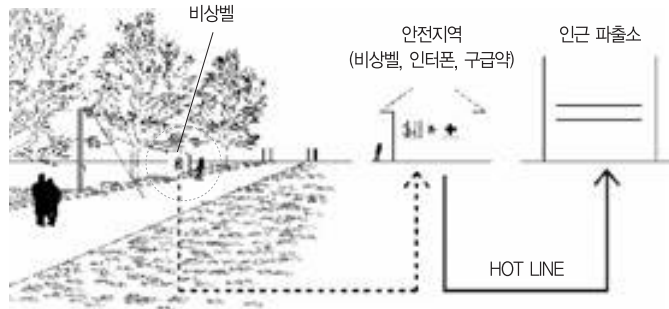
유지관리상 관리실을 둘 수 없거나 공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시설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지역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규정

인근지역의 안전지역 지정

- 관리실이 없는 도심 소규모 공원에는 적절한 근린생활시설 등에 안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지역은 공원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의 장소를 지정하고 거리 초과 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지역으로 지정된 건물 등에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안전지역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해당시설 내에 설치한다.
- 안전지역은 24시간 개방한다.
- 안전지역에는 관리인 등이 상주하여야 하며 인근 파출소 등과 연계된 전용 Hot-Line을 구축해야 한다.
- 안전지역은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인터폰, 비상벨, 비상구급약 등을) 갖추도록 한다.
- 안전지역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공원 내에 설치한다.

예시



●인근 파출소 및 지정 안전지역으로의 비상통신망의 연결



4.1 환경의 쾌적성 증진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하기 위해 오는 장소이므로 도시의 어떤 시설물보다 편안하고 쾌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원들은 노후화된 시설과 충분하지 못한 편의시설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설을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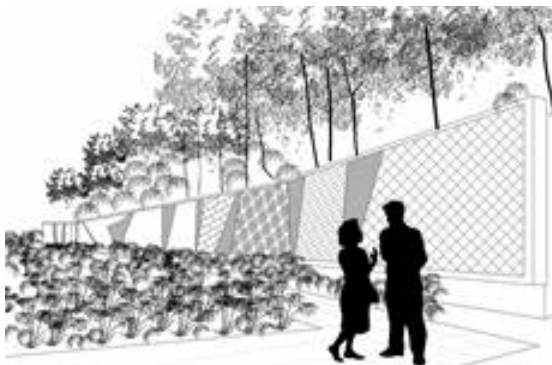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 수경 공간의 계획으로 미세 생태계를 조성한다(개천, 연못 등).
- 하안부의 생태적 조성으로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 육생 비오톱 조성으로 공원 자체가 소생태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시설물의 색채 디자인, 조명 디자인 등을 통해 생태공원의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한다.

금연 권장공원 지정

- 여행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 금연 권장공원에서는 금연내용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 흡연구역은 별도구역으로 설정한다.

예시



●공원 옹벽 색채 디자인 예시도



공간의 쾌적성 증진 4.2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하기 위해 오는 장소이므로 도시의 어떤 시설물보다 편안하고 쾌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원들은 노후화된 시설과 충분하지 못한 편의시설로 인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설을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규정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 쓰레기 수거방법을 감안한 공원 내 청소 및 관리동선을 별도로 마련하여 휴식 및 조망동선과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통은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고 통행이나 이용객이 많은 곳에 집중 설치한다.
- 쓰레기통은 보도 근처에 설치한다.
- 쓰레기통은 간이식, 분리수거식의 종류로 하고 간이식은 일정거리마다, 분리수거식은 사람의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간이식 : 일반쓰레기 전용, 분리수거식 : 재활용, 일반쓰레기 겸용).
- 공원 내 취사 및 취식을 금지하고 음식물의 취식행위는 허용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음료 및 약품류의 취식은 제외).
- 애완견의 배설물은 반드시 주인이 처리하게 한다.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 관리무소, 방문자센터와 같은 건축물의 벽면은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공원 내 휴게시설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기능과 미를 고려하여 차양 시설을 설치한다(수목, 차양막, 정자 지붕 등).
- 우천을 대비한 비가림 시설은 최소화 하여 설치하되 사람의 통행이 많고 이용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한다(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주변, 공원 입구 등).

공원주변의 쾌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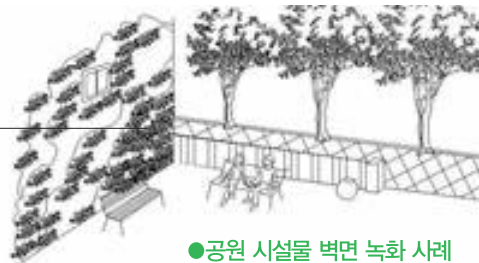
- 공원의 주요출입구, 공원이용자용주차장 등 공원주변의 공간 쾌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야간경관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

- 야간경관을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고려한다.

예시

공원시설물 벽면녹화



●공원 시설물 벽면 녹화 사례



4.3 친환경 계획 도입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 소재의 사용과 친환경 공법이 각광받고 있다. 공원 내 시설물에도 이와 같은 친환경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이 요구되지만 고비용 등의 이유로 일부 시설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거나 보수되는 공원들은 친환경 자재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목표

신설되는 공원과 정비를 요하는 공원의 모든 시설물에는 친환경적인 자재의 사용 및 공법을 적용한다.

규정

친환경 자재 사용

- 공원 내 보행로의 포장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투수성 블록, 잔디 블록 등).
- 어린이 놀이터 및 놀이마당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재생 페타이어 고무시트 및 폐·재 생목재 사용 금지).
- 기타 공원 시설물에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공원의 개보수 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이의 적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 공원의 수목관리와 공원시설의 유지에 사용되는 전력, 위생, 난방설비에는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 및 중수도 등의 재활용 동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예) 우수 저류조, 중수도 시설 활용 등을 통해 식수대를 제외한 조경용수, 화장실 용수, 생활용수를 절약
- 예)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난방 및 온수 기능을 일부 담당
- 예) 태양광 전지 부착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명시설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일부 부담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4.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화석 연료의 고갈과 함께 대체 에너지 및 절약형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에서 소비하는 소모적인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목표

공원 내 에너지의 소모량을 절감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공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규정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 공원 내 조명에는 센서 등을 부착해 자동점멸이나 조도조절 등의 능동적인 조도 관리를 한다.
- 관리사무소 및 방문자센터의 냉·난방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냉·난방은 하지 않도록 한다.
- 공원의 개보수 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며 이의 적용 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 공원화장실이나 관리센터 등에 사용되는 설비는 절수형(절수형 수전 등) 또는 초절수형(초절수형 변기 등)의 시스템을 적용한다.
- 조명 등은 고효율의 LED조명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인다.

옥상 및 벽면 녹화

- 공원 내 시설물은 옥상 또는 벽면녹화를 통하여 미적 효과와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다.

예시



일반용	대변기 물의 사용량	13ℓ / 1회
절수용	대변기 물의 사용량	6ℓ / 1회
초절수용	대변기 물의 사용량	3~4ℓ / 1회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변기 물 사용량 예시도)



4.5 애완견 보호 구역 마련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오늘날 애완견은 가족 이상의 또 다른 가족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공원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완견은 또 다른 공해로 여겨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애완견 동반자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

목표

애완견을 동반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

규정

애완견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

- 공원 내 애완견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애완견을 맡기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애완견 보호구역은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공원입구 등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애완견 보호시설은 애완견이 이탈하지 않게 분리벽을 설치하되 가변형으로 만들어 애완견의 수에 따라 달리 시설 할 수 있게 한다.
- 공원 내 애완견 배설물은 주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애완견 동반 산책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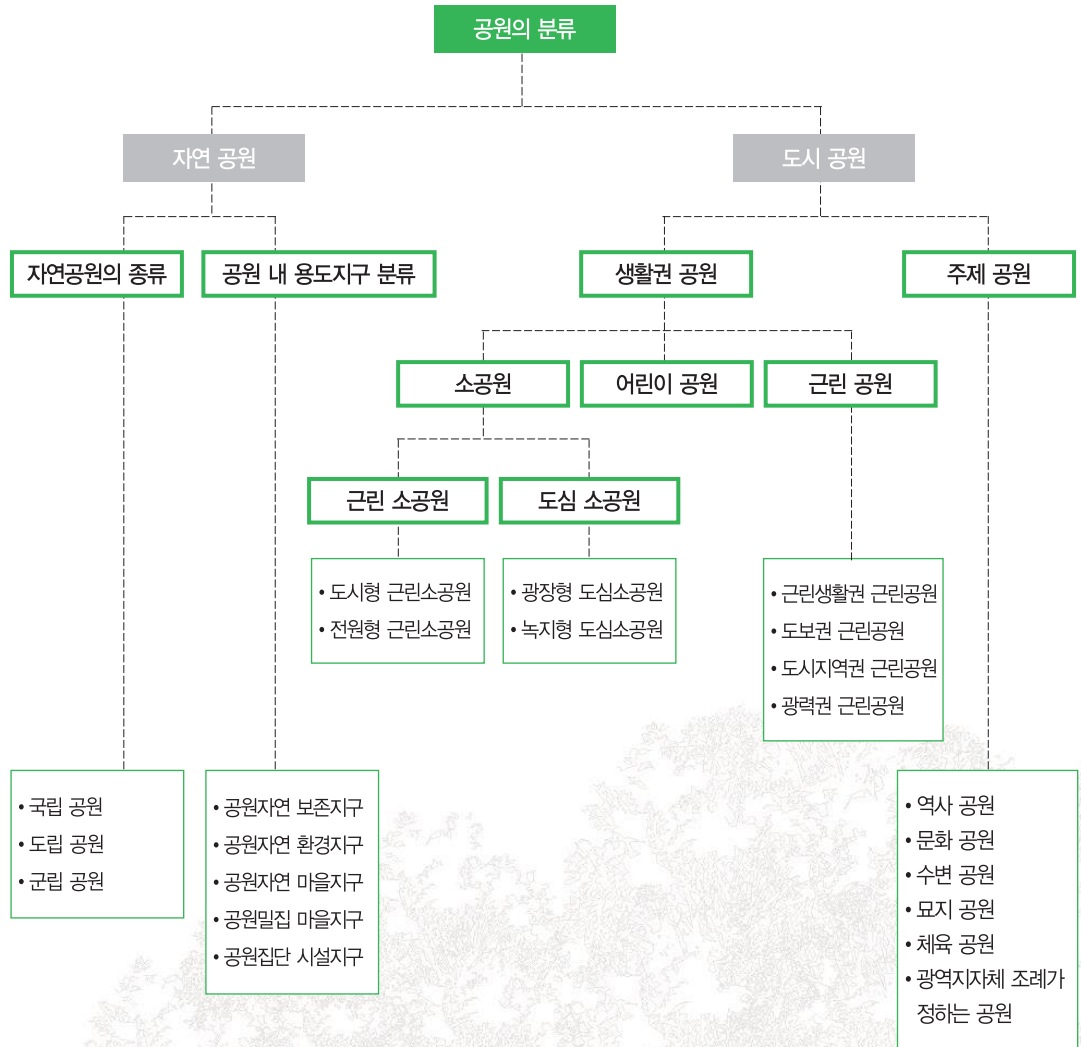
- 공원 내 여성친화산책로는 기본적으로 애완견 동반을 금지한다.
- 일정규모 이상인 공원에서 산책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애완견 동반 산책로를 지정한다.

예시



●애완견 동반 산책로의 조성

1. 공원의 분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공원의 종류와 설명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는 다음 각목의 공원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① 근린소공원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써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 도시형 근린소공원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조성할 수 있다.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전원형 근린소공원 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도심소공원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 광장형 도심소공원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이다			
	2. 어린이공원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 녹지형 도심소공원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제한없음	250m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3.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① 근린생활권근린공원 인근(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제한없음	제한없음	500m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② 도보권근린공원 도보권 인(반경 1,0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제한없음	제한없음	1000m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④ 광역권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1.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2.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3.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10만제곱미터 이상
	4.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1만제곱미터 이상
	5. 체육공원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6.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역사공원, 내지 체육공원에 의한 공원 이외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참고자료

- [1] 서울특별시, 女幸프로젝트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2009
- [2] 반영운외 5인, 광역권 근린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08
- [3] 강병근외 4인, 일본베리어프리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에 관한연구, -대한 논문집-, 2007
- [4] 김종규외 3인, 시설기능에 따른 도시공원 분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2002

관련법규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을 위한 조경 설계지침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식품위생안전법

2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여행아파트 가이드라인

여행아파트 평가기준표(필수)

여행아파트 평가기준표(선택/권고)

여행아파트 매뉴얼(세부규정)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구분	가이드라인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
1.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아파트	1. 여성친화보도 설치	선택	필수/선택
	2.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선택	선택
	3.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선택	선택
	4.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도입	권고	선택
	5. 여성 사용자의 설계 및 운영 관리 참여	선택	선택
	6. 여성 편의 및 지원 시스템(여성전문병원 연계) 확보	선택/권고	선택/권고
	7.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선택/권고	필수/선택/권고
	8.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필수/선택/권고	필수/선택
	9. 여성친화적 욕실 설치	선택/권고	선택
	10. 단위세대 수납공간 확보	선택	선택
	11. 생활편의형 설비시스템 설치	선택/권고	선택/권고
	12.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권고	권고
2.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아파트	1. 주거 유형의 다양화	권고	선택/권고
	2. 평면 유형의 다양화	선택	선택/권고
	3. 동별 알파스페이스 설치	권고	권고
	4. 차별화된 어린이시설 설치	선택/권고	선택/권고
	5. 노인 보호 시스템(데이케어센터) 도입	권고	권고
	6. 고품질 커뮤니티센터 조성	권고	선택/권고
3.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아파트	1. 여성안전귀가로 설치	필수	필수
	2. 야간 적정조도 유지	필수	필수
	3. 범죄예방 CCTV 설치	필수/선택	필수/선택
	4. 범죄예방설계(CPTED) 도입	선택	필수/선택
	5. 대피용 발코니 확보	선택/권고	선택
	6.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권고	권고
4.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아파트	1. 쾌적한 외부환경 조성	선택	선택
	2.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선택	선택
	3. 친환경 아파트 조성	선택	선택
	4.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조성	선택	선택
	5. 친환경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선택	선택
	6. 쓰레기 배출시스템 설치	선택/권고	선택/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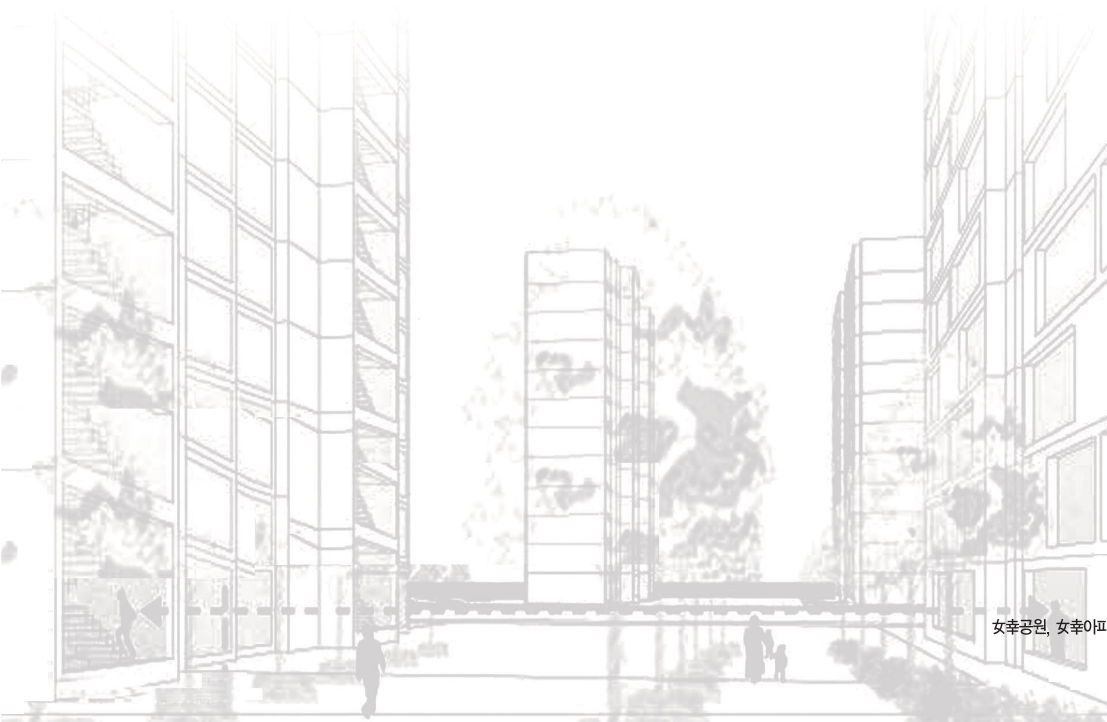
※ 2010년 이전과 이후의 등급구분 이유는 설계와 준공시기가 상이함으로 이에 타당한 평가표를 별도 작성함.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 2010년 사업승인 이전 아파트 적용

평가기준표(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
편의 (생활)	1.8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설치		필수	탈수 또는 건조 또는 건조분쇄 처리기 반영
	3.1	여성안전귀가로 설치	여성안전귀가로의 확보		필수	40~60LUX확보/ 주요지점에 CCTV/안내표지판 (바닥으로부터 85cm높이 지점에서 조도 유지)
안전			여성안전귀가로의 연계성		필수	주요교통시설과의 연계성/단지입구 및 여행친화보도와의 연계성
	3.2	야간 적정조도 유지	여성친화보도 및 주요 외부공간에 조도확보		필수	20~30m 이내 보행등 설치 /30~50LUX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 지점에서 조도 유지)
			주동 출입구 등 내부 공용공간의 조도확보		필수	동별 출입구 50LUX / 현관,계단실,복도 100~150LUX
			지하주차장의 조도확보		필수	130~200LUX
			쓰레기처리장소의 조도확보		필수	50LUX
	3.3	범죄예방 CCTV 설치	CCTV 설치		필수	주동출입구/지하주차장/ 여성안전귀가로/여성친화보도/ 쓰레기처리장/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상 170cm 높이에서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
			비상벨 설치		필수	지하주차장(주차면 길이방향 25m이내 설치)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 2010년 사업승인 이전 아파트 적용

평가기준표(선택/권고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거주)	1.1 여성친화보도 설치	여성친화보도 설치	주보행로 전체에 설치규정 반영	주보행로 일부에 설치 규정 반영	설치규정 일부반영	선택	최소폭 1.2m 이상 유지, 단차 없애기
		여성친화보도의 연계성	여성안전귀가로 등 단지 외부까지 확대 반영	단지 내 주요시설 과 연계	미반영	선택	
		스쿨존과의 연계성	원활히 연결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단지 내 산책로 설치	휴게시설 설치, 단지 내부 네트워킹 구축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보·차 분리 원칙 준수	반영		미반영	선택	
	1.2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남녀 1:1비율, 어린이용 시설설치, 손건조기 또는 종이타올 설치, 조도 150~200LUX 유지
	1.3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여성우선주차면의 설치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선택	주거용 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은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해 별도의 운영방식을 채용하면 유보
		지하주차장의 안전 확보	창의적 디자인 도입/ 자연채광 및 환기 활용	충분한 진출 입구 확보/식 별 기능구조 및 색채 계획	법규반영	선택	지하주차장 CCTV, 비상벨
	1.4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도입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운영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1.5 여성 사용자의 설계 및 운영 관리 참여	설계 및 운영관리 여성 참여	여성모니터링제 운영 및 여성의견 수렴 실시	여성모니터 링제 운영 또는 여성의견 수렴 실시	미반영	선택	
	1.6 여성 편의 및 지원 시스템(여성전문병원 연계) 확보	생활지원 시설	생활지원시설 전담운영기구 보유	지원시설 운영	미반영	선택	
		여성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여행플라자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해당 세대 이하 단지에 설치 시 가산점 부여
		여성전문병원의 연계성	적극연계 및 전담콜센터 설치운영	일부 연계	미반영	권고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1.7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주부전용공간 구성	별도로 구획된 공간제공	세대 내 공간 의 일부 할애 또는 겸용	미반영	선택	
			파우더룸(드레스룸)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전용면적 84㎡ 이하에 적용 시 가산점 부여
			가변형 구조 적용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발코니의 선택적 이용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거실 또는 침실로의 확장 제외
편의 (생활)	1.8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주방가구 배치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주방 다용도실의 연계성	원활한 연결	연결	미반영	선택	전용면적 60㎡ 초과에 창의적인 방법 적용 시 가산점 부여/ 전용면적 60㎡ 이하에 적용 시 가산점 부여
			환기시스템의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높이조절형 주방가구 설치	세대의 10% 이상 반영	세대의 10% 미만 반영	미반영	권고	
	1.9	여성친화적 욕실 설치	욕실의 옵션화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전용면적 60㎡ 이하에 적용 시 가산점 부여
			욕실의 안전	반영		미반영	선택	
			욕실의 조도	미반영		반영	선택	
			환기설비	자동환기시스템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위생설비	적극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높이조절형 위생기구 설치	세대에 10% 이상 반영	세대의 10% 미만 반영	미반영	권고	
	1.10	단위세대 수납공간 확보	수납공간 설치	규정면적 이상		규정면 적 미만	선택	
			수납공간 구조	창의적인 수납방식 제안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1.11	생활편의형 설비시스템 설치	환기시스템 설치	단위세대 내부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중앙 집중식 진공청소 시스템 설치	반영		미반영	권고	
	1.12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지능형 홈오토시스템)	지능형 설치	일반형 설치	미반영	권고	
			지능 설비시스템의 운영 관리	전담운영기구 보유	일반 관리	미반영	권고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배려	2.1 주거 유형의 다양화	시설기준	반영		미반영	권고	
		경제성의 확보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2.2 평면 유형의 다양화	시설기준	반영		미반영	선택	측세대 또는 단면을 활용한 평형 적용 시 가산점 부여
		경제성의 확보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2.3 동별 알파스페이스 설치	알파스페이스의 활용	운영프로그램 및 효율적 관리 적극 적용	시설 설치	미반영	권고	
		알파스페이스 설치	반영		미반영	권고	
		알파스페이스 시설 기준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2.4 차별화된 어린이시설 설치	보육시설	적극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선택	규정세대 이하 단지의 적용 시 가산점 부여
		어린이놀이시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적극 적용 시아확보 및 휴게공간 과 차량안전	시설설치	미반영	선택	
		어린이놀이터	테마형 놀이터 적용	시아확보 및 휴게공간과 차량안전	미반영	선택	
		어린이 전용차량 승하차장 설치	휴게공간 등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별도의 보육시설 마련	반영		미반영	권고	
	2.5 노인 보호 시스템 (데이케어센터) 도입	시설기준	의료전문가 상주 및 설치기준의 적극 적용	의료도우미 의 상주 및 설치 기준의 일부 적용	미반영	권고	
		운영 및 관리 방식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해당 대상지가 아닌 경우 연계된 시설의 적정성 판단
		별도의 보호 시설 마련	반영		미반영	권고	
	2.6 고품질 커뮤니티센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설치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생활지원시설과의 연계성	전담운영기구 보유 및 원활한 연결	원활한 연결	미반영	권고	
		생활편의시설과의 연계성	전담운영기구 보유 및 원활한 연결	원활한 연결	미반영	권고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안전	3.3 범죄예방 CCTV 설치	CCTV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관리 및 전담기구 운영	통합관리	시스템 미적용	선택	지상 170cm 높이에서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
		주동출입구의 구조	경비시스템 및 홀오토시스템과 결합	현관 경비 시스템 설치	미반영	선택	
		저층부(1~2층) 및 최상층 방범시스템	반영		미반영	선택	
		차량통제 시스템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3.4 범죄예방설계 (CPTED) 도입	자연적 감시(시아확보)	기타 주요장소에 추가 확보	시각의 사각지대 없애기/시아확보 (외부조경,주민친화공간,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공용공간, 여성센터, 여성친화 보도 등)	일부반영	선택	
		자연적 통제	원격검침/주동출입 및 현관개폐장치의 안전성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영역성 확보	범퍼공간의 효율적 조성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길거리의 눈 확보	대지의 복합적 사용/경비실적정배치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유지 및 관리의 원리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3.5 대피용 발코니 확보	대피용 발코니 설치	규정 반영		미반영	선택	
		피난동선 확보 및 알림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대피용 발코니 구조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주동 대피소 설치	반영		미반영	권고	
	3.6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시설설치 및 효율적 운영	시설 설치	미반영	권고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쾌적	4.1 쾌적한 외부환경 조성	자연 친화형 조경 계획	지역특성 및 정서고려		법적 시설 설치	선택	
		경관을 고려한 입면 계획	측벽계획 차별화된 외관 색채 계획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외부와의 소통	담장 제거 공공 공간 조성	개방적인 담장 조성	미반영	선택	
	4.2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주민친화공간 조성	창의적이고 원활한 이용 공간 조성	공간 조성	미반영	선택	
		공용공간의 쾌적성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반영	일부 기계설비	기계설비	선택	
		세대 내부의 쾌적성 증진	규정 반영	일부 반영	일면 통풍 및 Dark Zone	선택	
	4.3 친환경 아파트 조성	친환경 소재의 활용	주요부에 친환경인증 자재사용 적극 반영	주요부에 친환경인증자재 사용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	기본인증 등급 이상	기준인증 등급	미반영	선택	「우수 등급」기준
	4.4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조성	에너지 절약형 설비	규정 중 3개 항목 이상 적용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① 신재생에너지 활용 ② 고효율 LED 조명 사용 ③ 초절수형 위생기구 설치 ④ 법정 이상의 단열 및 단열 성능 확보 ⑤ 원격제어시스 템 사용
		에너지 성능 등급 확보	기준인증 등급 이상	기준인증 등급	미반영	선택	「2등급」기준
	4.5 친환경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자전거도로의 설치	적정폭과 기울기, 단지 내 연속성 확보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우천을 고려한 보관소 및 법적 대수 이상 적용	법적대수 이상 적용	법적대수 적용	선택	
	4.6 쓰레기 배출시스템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쓰레기 등과 분리된 전용공간		설치 안함	선택	
		쓰레기 처리시설의 청결 유지	쾌적(청소장비 설치)	보통	미반영	선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적극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일반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접근 및 수거의 용이 성, 재활용의 용이성		법적 시설 설치	권고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 2010년 사업승인 이후 아파트 적용

평가기준표(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
편의 (생활)	1.1	여성친화보도 설치			필수	최소폭 1.2m 이상 유지, 단차 없애기
	1.7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필수	세대 내 공간의 일부 할애 또는 겸용
	1.8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필수	탈수 또는 건조 또는 건조분쇄 처리기 반영
안전	3.1	여성안전귀가로 설치	여성안전귀가로의 확보		필수	40~60LUX확보/주요지점에 CCTV/ 안내표지판 (바닥으로부터 85cm높이 지점에서 조도 유지)
			여성안전귀가로의 연계성		필수	주요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단지입구 및 여행친화보도와와의 연계성
	3.2	야간 적정조도 유지	여성친화보도 및 주요 외부공간에 조도확보		필수	20~30m 이내 보행등 설치/ 30~50LUX (바닥으로부터 85cm높이 지점에서 조도 유지)
			주동 출입구 등 내부 공용공간의 조도확보		필수	동별 출입구 50LUX /현관,계단실, 복도 100~150LUX
			지하주차장의 조도확보		필수	130~200LUX
			쓰레기처리장소의 조도확보		필수	50LUX
	3.3	범죄예방 CCTV 설치	CCTV 설치		필수	주동출입구/지하주차장/여성안전 귀가로/여성친화보도/쓰레기처리장/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상 170cm 높이에서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
			비상벨 설치		필수	지하주차장(주차면 길이방향 25m이내 설치)
	3.4	범죄예방설계 (CPTED) 도입	자연적 감시(시야확보)		필수	시각의 사각지대 없애기/시야확보 (외부조경,주민친화공간, 어린이놀이 터, 지하주차장, 공용공간, 여성센터, 여성친화보도 등)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거주)	1.1 여성친화도 설치	여성친화도도의 연계성	여성안전귀가로 등 단지 외부까지 확대 반영	단지 내 주요 시설과 연계	미반영	선택	
		스쿨존과의 연계성	원활히 연결		미반영	선택	
		단지 내 산책로 설치	휴게시설 설치, 단지 내부 네트워킹 구축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보·차 분리 원칙 준수	반영		미반영	선택	
	1.2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남녀 1:1비율, 어린이용 시설설치, 손건조기 또는 종이타올 설치, 조도 150~200LUX 유지
	1.3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여성우선주차면의 설치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주거용 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은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해 별도의 운영방식을 채용하면 유보
		지하주차장의 안전 확보	창의적 디자인 도입/ 자연채광 및 환기 활용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충분한 진출 입구 확보/식 별 기능구조 및 색채 계획	법규반영	선택	지하주차장 CCTV, 비상벨
	1.4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도입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운영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1.5 여성 사용자의 설계 및 운영 관리 참여	설계 및 운영관리 여성 참여	여성모니터링제 운영 및 여성의견 수렴 실시	여성모니터 링제 운영 또는 여성의견 수렴 실시	미반영	선택	
	1.6 여성 편의 및 지원 시스템(여성전문병원 연계) 확보	생활지원 시설	생활지원시설 전담 운영기구 보유	지원시설 운영	미반영	선택	
		여성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여행플라자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해당 세대 이하 단지에 설치 시 가산점 부여
		여성전문병원의 연계성	적극연계 및 전담콜센터 설치운영	일부 연계	미반영	권고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권고 :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1.7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파우더룸(드레스룸)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전용면적 84㎡ 이하에 적용 시 가산점 부여
			가변형 구조 적용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발코니의 선택적 이용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거실 또는 침실로의 확장 제외
편의 (생활)	1.8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주방가구 배치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주방 다용도실의 연계성	원활한 연결	연결	미반영	선택	전용면적 60㎡ 초과에 창의적인 방법 적용 시 가산점 부여/ 전용면적 60㎡ 이하에 적용 시 가산점 부여
			환기시스템의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높이조절형 주방가구 설치	세대의 30% 이상 반영	세대의 30% 미만 반영	미반영	선택	
	1.9	여성친화적 욕실 설치	욕실의 옵션화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전용면적 60㎡ 이하에 적용 시 가산점 부여
			욕실의 안전	반영		미반영	선택	
			욕실의 조도	미반영		반영	선택	
			환기설비	자동환기시스템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위생설비	적극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높이조절형 위생기구 설치	세대의 30% 이상 반영	세대의 30% 미만 반영	미반영	선택	
	1.10	단위세대 수납공간 확보	수납공간 설치	규정면적 이상		규정면 적 미만	선택	
			수납공간 구조	창의적인 수납방식 제안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1.11	생활편의형 설비시스템 설치	환기시스템 설치	단위세대 내부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중앙 집중식 진공청소 시스템 설치	반영		미반영	권고	
	1.12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지능형 홈오토시스템)	지능형 설치	일반형 설치	미반영	권고	
			지능 설비시스템의 운영 관리	전담운영기구 보유	일반 관리	미반영	권고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배려	2.1 주거 유형의 다양화	시설기준	반영		미반영	선택	
		경제성의 확보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2.2 평면 유형의 다양화	시설기준	반영		미반영	선택	측세대 또는 단면을 활용한 평형 적용 시 가산점 부여
		경제성의 확보	적극 적용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2.3 동별 알파스페이스 설치	알파스페이스의 활용	운영프로그램 및 효율적 관리 적극 적용	시설 설치	미반영	권고	
		알파스페이스 설치	반영		미반영	권고	
		알파스페이스 시설 기준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2.4 차별화된 어린이시설 설치	보육시설	적극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선택	규정세대 이하 단지의 적용 시 가산점 부여
		어린이놀이시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적극 적용 시아확보 및 휴게공간 과 차량안전	시설설치	미반영	선택	
		어린이놀이터	테마형 놀이터 적용	시아확보 및 휴게공간과 차량안전	미반영	선택	
		어린이 전용차량 승하차장 설치	휴게공간 등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별도의 보육시설 마련	반영		미반영	권고	
	2.5 노인 보호 시스템 (데이케어센터) 도입	시설기준	의료전문가 상주 및 설치기준의 적극 적용	의료도우미 의 상주 및 설치 기준의 일부 적용	미반영	권고	
		운영 및 관리 방식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권고	해당 대상지가 아닌 경우 연계된 시설의 적정성 판단
		별도의 보호 시설 마련	반영		미반영	권고	
	2.6 고품질 커뮤니티센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설치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생활지원시설과의 연계성	전담운영기구 보유 및 원활한 연결	원활한 연결	미반영	권고	
		생활편의시설과의 연계성	전담운영기구 보유 및 원활한 연결	원활한 연결	미반영	권고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안전	3.3 범죄예방 CCTV 설치	CCTV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관리 및 전담기구 운영	통합관리	시스템 미적용	선택	지상 170cm 높이 에서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
		주동출입구의 구조	경비시스템 및 홈오트시스템과 결합	현관 경비 시스템 설치	미반영	선택	
		저층부(1~2층) 및 최상층 방범시스템	반영		미반영	선택	
		차량통제 시스템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3.4 범죄예방설계 (CPTED) 도입	자연적 통제	원격감침/주동출입 및 현관개폐장치의 안전성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영역성 확보	범퍼공간의 효율적 조성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길거리의 눈 확보	대지의 복합적 사용/ 경비실적정배치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유지 및 관리의 원리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3.5 대피용 발코니 확보	대피용 발코니 설치	규정 반영		미반영	선택	
		피난동선 확보 및 알림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대피용 발코니 구조	적극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주동 대피소 설치	반영		미반영	선택	
	3.6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시설설치 및 효율적 운영	시설 설치	미반영	권고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쾌적	4.1 쾌적한 외부환경 조성	자연 친화형 조경 계획	지역특성 및 정서고려		법적 시설 설치	선택	
		경관을 고려한 입면 계획	측벽계획 차별화된 외관 색채 계획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외부와의 소통	담장 제거 공공 공간 조성	개방적인 담장 조성	미반영	선택	
	4.2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주민친화공간 조성	창의적이고 원활한 이용 공간 조성	공간 조성	미반영	선택	
		공용공간의 쾌적성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반영	일부 기계설비	기계설비	선택	
		세대 내부의 쾌적성 증진	규정 반영	일부 반영	일면 통풍 및 Dark Zone	선택	
	4.3 친환경 아파트 조성	친환경 소재의 활용	주요부에 친환경인증 자재사용 적극 반영	주요부에 친환경인증자재 사용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	기본인증 등급 이상	기준인증 등급	미반영	선택	「우수 등급」기준
	4.4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조성	에너지 절약형 설비	규정 중 3개 항목 이상 적용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① 신재생에너지 활용 ② 고효율 LED 조명 사용 ③ 초절수형 위생기구 설치 ④ 법정 이상 의 단열 및 단열 성능 확보 ⑤ 원격제어시스 템 사용
		에너지 성능 등급 확보	기준인증 등급 이상	기준인증 등급	미반영	선택	「2등급」기준
	4.5 친환경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자전거도로의 설치	적정폭과 기울기, 단지 내 연속성 확보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우천을 고려한 보관소 및 법적 대수 이상 적용	법적대수 이상 적용	법적대수 적용	선택	
	4.6 쓰레기 배출시스템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쓰레기 등과 분리된 전용공간		설치 안함	선택	
		쓰레기 처리시설의 청결 유지	쾌적(청소장비 설치)	보통	미반영	선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적극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선택	
		일반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접근 및 수거의 용이 성, 재활용의 용이성		법적 시설 설치	권고	



여성친화보도 설치 1.1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친화보도」란 단지 내 주보행로의 일부 또는 전체에 여성보행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보도를 일정폭 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만족도와 보행안전도를 높인 친여성 보행로를 말한다. 여행아파트에서 「여성친화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일반보도와 차별화된 편의가 제공됨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여성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보행길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목표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주보행로의 일부 혹은 전체에 일정 폭 이상을 가진 여성친화 보도를 마련하도록 하며 여성안전귀가로, 초등학교 등하교로와의 겸용 및 연계를 권장한다.

규정

여성친화보도 설치

- 보행로에는 최소 1.2m 이상의 여성친화보도를 확보하도록 한다(2m이상 권장). 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단지의 개보수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m이상 완화할 수 있다.
- 여성친화보도 안에는 식재를 포함한 돌출형 시설물 설치하지 않으며 적정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벤치나 자전거거치소와 같이 시설물의 이용에 일정공간이 요구되는 시설물의 활용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단지 내 자전거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한다(종단기울기는 최소 1/12 이하, 횡단기울기는 1/50~1/25 이내).
- 맨홀이나 점검구 등은 가급적 여성친화보도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여성친화보도의 포장재는 부드럽고 일체성을 가진 마감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마감재의 이음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2mm 이내).
-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우천 시 빗물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 논슬립이 있는 경우 걸리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 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단차 등을 없애고 유모차와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여성친화보도의 연계성

- 여성친화보도는 단지의 주출입구와 단지 내 복리시설 및 상가 등 주요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단지외부 도로의 여행길 등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연계를 권장한다.

스쿨존과의 연계성

- 여성친화보도는 초등학교 길과 연계되도록 하며 스쿨존에 가장 가까운 단지 출입구를 경유하도록 권장한다.



1.1 여성친화보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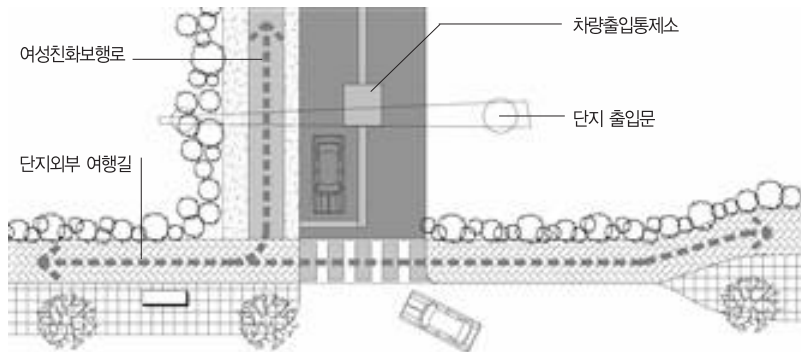
단지 내 산책로 설치

- 단지 내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를 폭 1.5~2m 내외로 조성하고 300~500m 이내 마다 휴게소, 휴게벤치를 설치한다.
- 단지 산책로는 단지 전체 또는 일부구간을 도로로 산책하는 방식이며 여성친화보도와 연계되도록 한다.
- 단지 내 산책로는 자전거 도로 등으로 인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 단지 내 산책로는 여성친화보도 등 단지내부의 주요보도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산책로는 여성친화보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보·차 분리 원칙 준수

- 여성친화보도는 원칙적으로 보·차 분리가 명확하여야 한다.
- 여성친화보도는 주차장, 주차관련 옥외공간과 일정부분 격리하여 설치한다.
- 여성친화보도 및 산책로는 단지의 상시 차량동선(긴급차량동선 포함)과 원칙적으로 교차되지 않아야 하며 차량관련 설치물(주차램프 등)로 인해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단 여성친화보도 및 산책로의 사고대비용 긴급 차량은 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단지의 개보수 등 긴급차량 동선과의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 보행 안전을 위하여 이동식 시설물(이동식 볼라드 등)을 운영하도록 한다.

예시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여성친화보도의 연계 예시도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1.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최근 아파트 단지들은 특성화, 대형화 되고 있고 단지 내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민상호교류와 옥외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부대복리시설 내에 설치되는 화장실 외에 추가로 여성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증대에 따른 주민과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사용이 편리한 여성 편의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다.

규정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 300세대 이상의 단지 내 지상층에 옥외활동을 하는 주민과 여성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남녀의 사용이 분리된 여성편의화장실을 설치한다.
- 주동 하부의 피로티 또는 단지의 상가 등 타시설과 복합하여 여성편의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여성편의화장실의 개소는 300세대가 넘는 매 500세대마다 1개소 이상으로 하며 주민과 여성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분산하여 배치한다.
- 커뮤니티센터 및 부대복리시설내에 변기수 확보(남녀 1:1비율), 어린이용 시설설치, 150~200LUX의 조도 확보, 손건조기 또는 종이타월이 설치된 여성편의화장실을 1층에 마련한다.
- 여성편의화장실은 놀이터 등 옥외의 주요시설에서 사용거리 50~70m 이내, 여성용 단위부스 2개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1.3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일반적으로 여성은 짐을 싣고 내리거나 유아를 동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여성의 활동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가진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에 여성 우선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표

주차 진출입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여성우선주차 장소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확보한다. 또한 아파트의 주차장 출입구와 램프 및 주차방식 등을 개선하여 양질의 주거문화를 보급하도록 한다.

규정

여성우선주차면의 설치

- 여행아파트의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 여성우선주차구역은 지상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층에 설치 시에는 지면에서 제일 가까운 진·출입구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주동코어 근처에 주차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우선주차면은 전체 주차 대수의 10~20%로 하며 주동 출입과 관련하여 시야가 확보된 곳에 적절히 배분 설치한다.
- 여성우선주차구역은 경비실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위세대용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은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해 별도의 운영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유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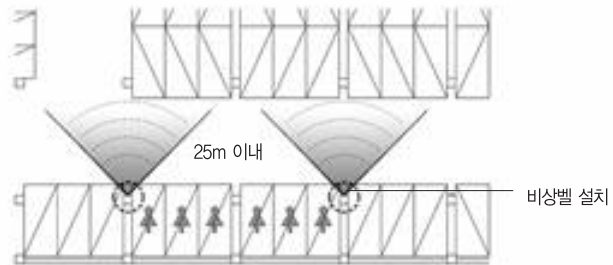
지하주차장의 안전 확보

- 지하 주차장 입구와 출구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진·출입구 폭, 기울기, 회전반경 등을 법적 규정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 한다.
- 지하주차장내 램프는 300~400대당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 주동 출입구, 차량진·출입 피난동선 등의 식별이 가능한 구조 및 색채 계획을 실시한다(피난 동선과 비상벨 설치 위치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의무화).
- 범죄로부터 안전, 이동차량으로 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썬 등을 도입하고 친환경적 마감재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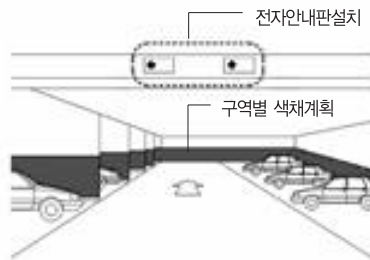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1.3

예시



● 지하주차장 25m 이내 마다 비상벨 설치



● 지하주차장 구역별 색채 계획, 출입구 벽면 디자인 사례 예시도



1.4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도입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 대수는 「주택법」 등에 의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주차장은 법정 대수만으로는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할 수 없어 통로까지 주차차량에 점유 당하며 순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차방식인 가족단위 연접 주차제를 도입하여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주차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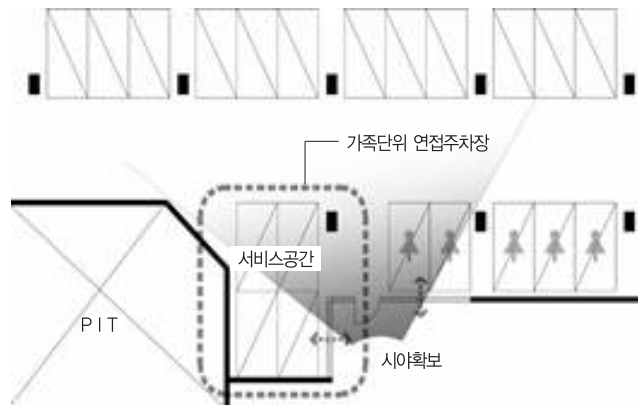
법정 주차 대수 외에 늘어나는 차량의 효율적 주차관리와 주차편의를 위하여 가족단위 연접주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규정

가족단위 연접주차제 운영

- 단위세대용 지하주차장 등에 별도의 차로를 확보할 수 없는 주차구획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중심의 연접주차제를 적용한다.
- 연접주차구획의 기본단위는 2대당 2.5m×10m이며 직각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 연접주차 대상 차량은 법정 주차 대수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관리 규정을 통하여 사용가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예시



●가족단위 연접주차 사례 예시도



여성 사용자의 설계 및 운영 관리 참여 1.5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입주 이후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 혹은 아파트 사용 예정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행아파트 참여 모임을 구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도록 한다.

목표

주민의 생활패턴과 지역 특성이 여성의 감성으로 완성되는 여행아파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배려한 여행아파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규정

설계 및 운영관리 여성 참여

- 아파트의 설계 및 관리,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에 역세권, 시프트, 보금자리주택 등 주민의 생활패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 보금자리 주택 등 사전예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설계 등에 여성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기적으로 여성 입주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여성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의 개선을 권장한다.
예) 선호도 조사내용은 단지시설, 부대 편의시설, 평면구조, 마감재 등
-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여성주민을 일정비율 참여시켜 관리규정 운영 및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6 여성 편의 및 지원 시스템 (여성전문병원 연계) 확보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여성들은 사회생활과 가사, 육아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내에 여성들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여성의 생활이 보다 윤택하고 원활해 질 것이다. 또한 잠시 가사노동에서 벗어난 여성들만의 휴게공간, 건강증진을 위한 여성전문병원 연계 시스템 도입,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 공간을 마련한다면 여성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목표

아파트 단지 내에 여성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시설과 취미 및 학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인근 여성전문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생활지원 시설

- 가사, 육아도우미, 노인서포터, 지역정보 조회 등 필요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콜센터를 커뮤니티센터나 관리 사무소 내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 단, U-city구축에 의한 지역정보 및 생활정보관련 홈네트워킹이 가능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센터에는 단지 및 인근현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여성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 500세대가 넘는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 등에 여성의 교육 및 취미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전용 공간(여행플라자)을 최소 30평 이상 마련한다.
- 3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여성을 위한 휴게공간을 옥외운동공간 혹은 여행플라자에 인접하여 300세대마다 1개소 이상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 여성휴게공간은 시야 및 채광이 확보된 곳에 설치하며 지붕이 있는 구조(평상형, 벤치형, 대면 가능한 형태)로 한다.
-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여성 주민이 참여 가능한 취미, 학습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성전문병원의 연계성

- 질병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인근 병원 혹은 여성전문병원과 연계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 생활지원시설을 담당하는 전담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예시



●여성편의 및 지원 시스템 연계도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1.7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동일한 면적의 단위세대 내에서 가족유형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며 주부의 생활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목표

가족유형과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와 위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주부의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인 설계기법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규정

주부전용공간 구성

- 주부의 취미활동이나 작업을 위해 주부동선이 편리한 곳에 주부전용공간을 마련한다(59㎡ 미만의 소형평형에서는 자투리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파우더룸(드레스룸) 설치

- 전용면적 84㎡ 초과의 단위세대에는 주부의 생활편의를 위해 안방 또는 부부욕실과 연계된 파우더룸, 드레스룸을 설치한다.

가변형 구조 적용

- 전용면적 59㎡ 이상의 단위세대에는 거실과 인접한 침실의 경우 거실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한다.
- 거실로 확장된 침실은 필요할 경우 다시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침실 간에도 가변형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 이외에 성능적 기능적 가변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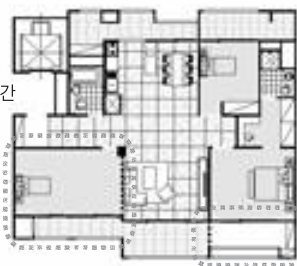
발코니의 선택적 이용

- 발코니의 경우 거실확장이 아닌 작업실 또는 다목적실 등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 발코니가 확장되거나 용도 변경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시



〈기본형〉



〈침실확장형〉



〈거실확장형〉

●가변형 단위세대 평면 예시도



1.8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주부의 가사활동 대부분은 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작업동선의 최소화, 주방의 안전 및 쾌적성을 고려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경감하고 여성의 생활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표

작업효율을 고려한 주방가구배치 및 주방 환경개선을 위한 자동환기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가사활동의 편의 및 쾌적성을 추구한다.

규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설치

- 싱크대 하부에는 탈수기, 건조기, 분쇄기 또는 건조 후 분쇄(건조분쇄기)하여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 탈수 또는 건조 또는 건조 후 분쇄(건조분쇄기)된 음식물을 처리할 경우 수거가 간편하고 잔여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주방가구 배치

-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작업효율이 높은 U자형(ㄱ자형 배치에 아일랜드 테이블 등을 설치한 경우 포함) 주방설계를 반영하여 작업동선을 최소화 한다.
- 전용면적 49㎡ 이상 ~ 85㎡ 이하일 경우 작업효율이 높은 L자형(ㄣ자형 배치에 아일랜드 테이블 등을 설치한 경우 포함) 주방설계를 반영하여 작업동선을 최소화 한다. 단, 주방평면에 의해 일자형 배치를 한 경우는 충분한 가구길이의 확보를 위한 창의적 디자인(길이 확장형 가구나 이동식 테이블 설치 등)을 도입 한다.
- 아일랜드 테이블은 이동식 또는 다림판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싱크대, 테이블 등의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한다.
- 주방에 설치되는 수납장에 메모 가능한 칠판 등을 제공하여 가족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절수형 수전을 사용한다.



여성친화적 주방 설치 1.8

주방과 다용도실의 연계성

- 전용면적 60㎡ 초과일 경우 주방과 인접하여 외기에 면한 곳에 다용도의 작업이 가능한 다용도실(발코니 포함)을 설치한다.
- 주방과 인접하여 외기에 면한 곳에 세탁공간(다용도실 포함)을 설치하여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세탁실 내에는 빨래건조용 설비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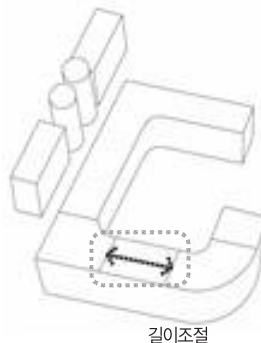
환기시스템의 설치

- 전용면적 60㎡ 초과일 경우 음식물 조리나 가사활동에 의해 냄새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후드방식을 지양하고 실내환기시스템을 도입한다.
- 주방가구식 환기용 후드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스위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운행 중 소음을 최소화한 설비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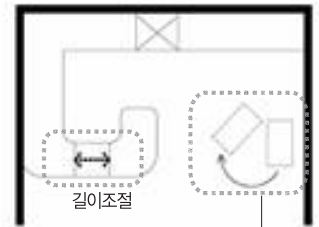
높이조절형 주방가구 설치

- 주방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높이 조절형 시스템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예시



길이조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테이블

곡면부분의 가구 모듈화 → 주방 면적에 따른 유동적 설계 → 제작원가 절감

●U자형 주방 가구의 설치 예시도(U자형 주방의 특징)



1.9 여성친화적 욕실 설치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세대 내의 쾌적한 위생환경과 가족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욕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표

세대 내의 위생환경을 최적화하고 가족간의 이용편의를 도모 한다.

규정

욕실의 옵션화

- 전용면적 60㎡ 초과일 경우 부부욕실을 옵션화하여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침실 수납공간 또는 가족욕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단, 후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용용도를 변경한 욕실은 필요시 다시 욕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욕실 내부에서 변기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등 사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권장한다.

욕실의 안전

- 욕실바닥은 미끄럼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욕조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거나 바닥에 미끄럼완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설치한다.

욕실의 조도

- 욕실(부부욕실에 설치되는 파우더룸 등 포함)의 밝기는 150Lux가 유지되도록 한다.

환기설비

- 화장실 내부에는 자동환기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한다.
- 수동식 환풍기의 경우 별도의 스위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운행 중 소음을 최소화한 설비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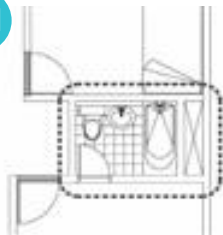
위생설비

- 전용면적 60㎡ 초과인 욕실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욕조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위생기구 등 욕실 내에 설치되는 설비는 절수형 또는 초절수형 시스템을 적용한다.
- 욕실(부부욕실에 설치되는 파우더룸 등 포함)에는 사용에 편리한 거울 및 수납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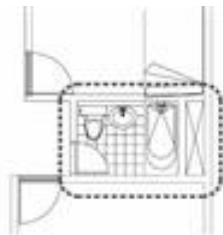
높이조절형 위생기구 설치

- 욕실 내에 설치되는 세면기 중 1개소 이상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방식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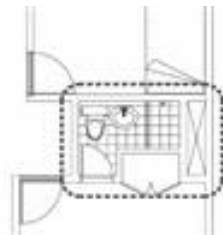
예시



〈기본 TYPE - 부부욕실〉



〈옵션 TYPE1 - 공용욕실〉



〈옵션 TYPE2 - 부부욕실+수납공간〉

● 옵션형 욕실 계획 예시도



단위세대 수납공간 확보 1.10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세대 내에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형 가구의 개인 소유화를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절감의 효과를 증대하는데 있다.

목표

세대 내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거주편의를 제고한다.

규정

수납공간 설치

- 수납공간은 창고, 주방가구 반침 및 신발장, 장식장과 같은 붙박이가구(욕실장, 거실장 제외)를 말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전용면적비율 3~5% 이상의 수납공간을 설치한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일 경우 전용면적비율 5~6% 이상의 수납공간을 설치한다.
-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전용면적비율 6~7% 이상의 수납공간을 설치한다.
- 수납창고 또는 수납선반은 발코니 확장부분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비상시 피난 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를 금하며 피난용 경량칸막이를 창고외벽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수납공간 구조

- 이용이 편리한 적정위치에 설치하며 수납장소와 수납방식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다.
- 수납공간 내에는 수납이 용이하도록 선반과 서랍 등을 설치한다.
- 수납공간(붙박이장식장 제외)에는 문을 달아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11 생활편의형 설비시스템 설치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세대 내부에 주부의 가사활동 편의와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층 수준 높아진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있다.

목표

여성의 가사활동 편의와 효율적인 주거관리를 위하여 선진화된 설비시스템을 설치한다.

규정

환기시스템 설치

- 단위세대 전 평형에는 Hood 방식과 함께 실내환기시스템을 설치한다

중앙 집중식

진공청소 시스템 설치

- 전용면적 60㎡초과세대의 경우 중앙 집중식 진공청소설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사활동의 편의를 제공한다.
- 청소용 콘센트는 적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예시



● 중앙 집중식 진공청소설비 시스템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1.12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세대 내부에 주부의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돕고 주거환경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설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준 높은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한다.

목표

단위세대 내부에 지능형 설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여성의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돕고 효율적인 주거관리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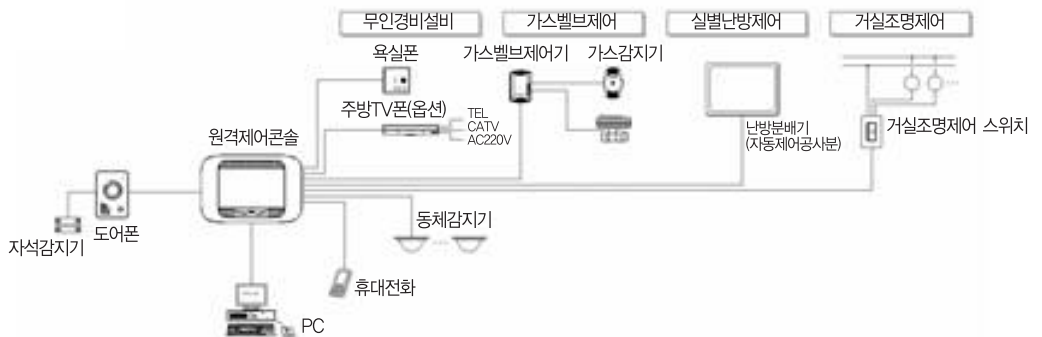
규정

지능형
설비시스템 설치
(지능형 홈오토시스템)

- 안전, 편의, 쾌적 등의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홈오토시스템을 설치한다.
예) 안전기능은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동출입개폐 및 출입제어시스템 등
예) 편의기능은 양방향인터넷시스템 등
예) 쾌적기능은 온습도조절시스템, 실내조명조작시스템 등
- 홈오토시스템은 조작이 간편하고 자동제어가 가능하며 사용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정보관련 양방향인터넷시스템은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센터의 종합상황실 등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지능형 설비시스템
운영 관리

예시



● 홈오토시스템 설치 예시도



2.1 주거 유형의 다양화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향후의 생활여건과 거주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어질 아파트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마련과 건축구조 및 설비의 선진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목표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변모와 거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거형식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선택형 아파트를 조성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사회적 진화를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규정

시설기준

- 1,0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사회통합형(임대아파트 포함), 코하우징 등 다양한 거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의 공급(전체 세대 대수의 10~20% 이내)을 권장한다. 단 전체세대가 임대 공급일 경우 다른 유형의 주거를 혼합 배치하도록 한다.

경제성의 확보

- 주거유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시공 및 유지 관리비의 최소화를 실현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가구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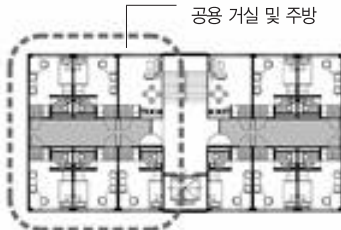


〈2가구 평면〉

●임대 복합형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예시도



단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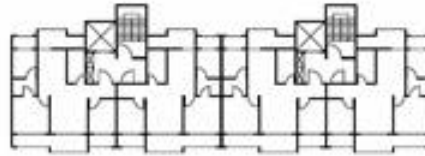
공용 거실 및 주방

●코하우징(CO-Housing) 계획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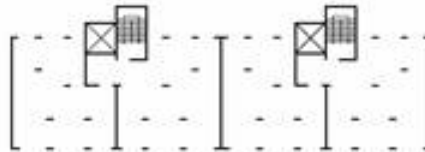


주거 유형의 다양화 2.1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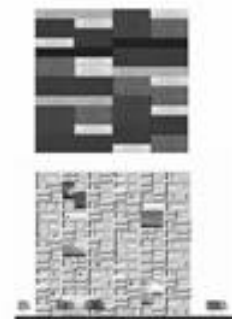
TYPE 1 - 구조물이 벽으로만 구성되는 벽식구조시스템의 공동주택 평면도



TYPE 2 - 세대 내부의 통합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평면도

●평면의 가변성과 저비용 구조 시스템을 반영한 예시도

구분	생활시나리오	평면계획	구분	생활시나리오	평면계획
A형	맞벌이가족		E형	보통형 공간구조를 선호하는 가족	
B형	독거노인		F형	휴식과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가족	
C형	리빙테라스를 중시하는 가족		G형	마당을 원하는 가족	
D형	자녀의 거주환경을 우선하는 가족				



●생활 시나리오에 의한 평면계획의 가변성

●시나리오 공간계획에 의한 입면



2.2 평면 유형의 다양화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향후의 생활여건 변화와 주민의 거주환경 요구 증가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어질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유형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마련과 건축구조 및 설비의 선진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목표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변모와 다양한 거주환경 요구에 따라 새로운 평면형의 도입과 가변형 구조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선택형 아파트를 조성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규정

시설기준

- 주민들의 거주편의를 위해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동일 면적의 다양한 평면유형의 공급을 권장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150세대에 1개 평형 적용, 150세대를 넘는 120세대마다 평형 추가한다.
- 전용면적 85㎡ 초과는 100세대에 1개 평형 적용, 100세대 넘는 90세대 마다 평형 추가한다.
- 동일한 단위세대 평면은 3개동(중정형이나 블록형은 4개동)이하에 적용한다.
- 동일한 단위세대 평면에서 축세대에 창의적인 축벽 개방(창호 또는 발코니 설치)을 적용한 경우 별도 평형으로 분류한다.
- 지상층과 접지층, 최상층과 옥상층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고려한 평면일 경우 이를 별도 평형으로 분류한다.
- 세대간 수직수평의 통합이 유리한 구조를 권장한다.
- 새로운 주거유형이 공급되는 경우 여성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야 하며 주거부분과 주거부분의 출입경로 전부 또는 일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경제성의 확보

- 기존 구조체의 전면 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가변형구조 또는 설비시스템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친환경성을 높이고 이의 적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면 유형의 다양화 2.2

예시

구 분	형 상	세 대	구조시스템
통 합 형	수직통합 A형		· 보+기둥
	수직통합 B형		· 보+기둥
	수평통합		· 보+기둥 · 무량판

●수직·수평 통합 가능한 개발 모델 예시도

단 계	경 과	가족 구성	비 고
1단계	0년~4년	부부(20대중후반~30대초)+자녀2(0~4세)	무자녀~유아자녀
2단계	5년~30년	부부(30대중후반~50대후)+자녀2(10~20대중후)	학령기자녀, 미혼자녀
3단계	31년~50년	부부(60대초~70대말)	자녀 모두 출가, 노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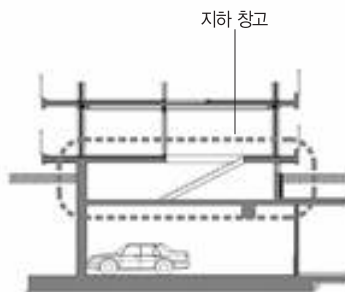
	1단계(부부+자녀2)	2단계(부부+자녀2)	3단계(부부)
33평형			
	1단계(4LDK:부부+자녀2)	2단계(3LDK:부부+자녀2)	3단계(4LDK:부부+자녀2)
48평형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평면계획의 가변성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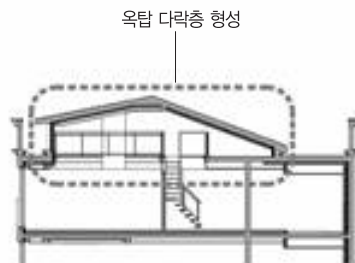


2.2 평면 유형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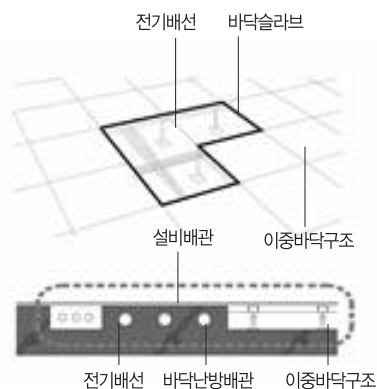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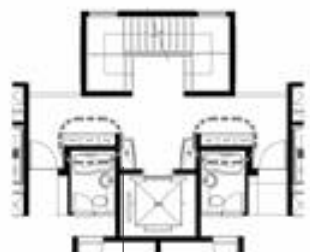
●지반층 인접 세대 지하층 활용예시도



●상층 세대 옥탑 부분 활용 예시도



전기배선 바닥난방배관 이중바닥구조



각 세대별 전기배관 분리용 shaft 설치

●공간재구성시 배관 및 배선의 교체가 용이한 바닥 시스템의 구조 예시도



동별 알파스페이스 설치 2.3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요즘의 아파트는 대형화, 고층화, 고급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단위세대 면적과 부대복리시설 공급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동별로 손님접대, 작업공간, 다목적실, 교류실 같은 주민의 사적, 공적 활용 장소(알파스페이스)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거주 편의를 제공하고 이웃과의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목표

아파트 동별로 주동 내부에 공동 사용공간을 조성하여 각 세대의 특별한 용도와 동별 커뮤니티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알파스페이스의 활용

- 알파스페이스란 손님접대, 공동 작업 등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세대 내부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용공간 내 설치되는 가용공간(임대공간)을 말하며 동별로 적정규모를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 반상회 등의 동별 교류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알파스페이스는 주민들의 사용 용도에 맞는 임대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과 주부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알파스페이스의 설치

- 알파스페이스는 각 동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알파스페이스는 90~180세대(중정형 또는 블록형은 80~150세대) 당 1개소 이상으로 하며 주동 상호간 주 출입구가 30~50m이내인 경우 한 곳의 알파스페이스를 1~3개의 주동(중정형 또는 블록형은 1~4개의 주동)이 사용할 수 있다.
- 알파스페이스 면적은 해당 장소(전용면적 105㎡ 초과 사용자 제외)의 사용자 평균 전용면적 이상(2개 이상의 주동이 사용할 경우 해당 면적의 120%이상)을 적용한다.
- 알파스페이스는 각 동별 저층부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주동의 특성에 따라 주동의 중층부 또는 옥상층에 마련할 수 있다. 단 옥상층 알파스페이스는 15층을 넘는 아파트에서 적용할 수 없다.



2.3 동별 알파스페이스 설치

알파스페이스의 시설 기준

- 알파스페이스는 천정과 벽을 갖춘 구획된 장소로서 정원(옥상정원 포함), 휴게공간, 다목적 공간, 공용창고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알파스페이스에는 간단한 주방설비와 편의 도구 및 중앙 관리실과 연락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알파스페이스에는 1개 이상의 단위부스를 갖는 남녀화장실이나 세대내 욕실타입의 화장실을 설치한다. 단 남녀사용이 분리된 화장실 설치 시 여성편의화장실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알파스페이스 활용 예시도



차별화된 어린이시설 설치 2.4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자녀의 양육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회가 인식하고 사회적 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표

여행 아파트 단지 내에 차별화된 보육 및 놀이 시설 등을 마련하여 여성들에게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주거문화를 제공한다.

규정

보육시설

-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40~50인 이상,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20~30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을 마련하여야하며 그 중 30% 이상을 영아를 위한 탁아시설로 겸할 수 있다.
- 보육 및 탁아시설은 세대 내 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은 「주택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준하도록 하며 아파트 관리규정 등을 활용하여 운영시간과 관리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은 피로티 하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상층으로 하고 시야 확보 및 채광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 보육시설은 노유자시설의 내부 또는 노유자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 인접하여 놀이터를 일정 규모로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놀이시설

-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는 별도로 모험 놀이공간과 같은 교육기능을 가진 놀이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는 어린이놀이터 규모 이내로 하며 실외뿐 아니라 피로티, 주민공동시설 내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보육관련 또는 학교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 놀이시설 주변에는 어린이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휴게공간을 적정하게 설치한다.
- 놀이시설물은 「놀이시설물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터

- 교육의 기능, 상상력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다.
- 놀이터주변에는 어린이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휴게공간을 적정하게 설치한다.
- 놀이시설물은 「놀이시설물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차별화된 어린이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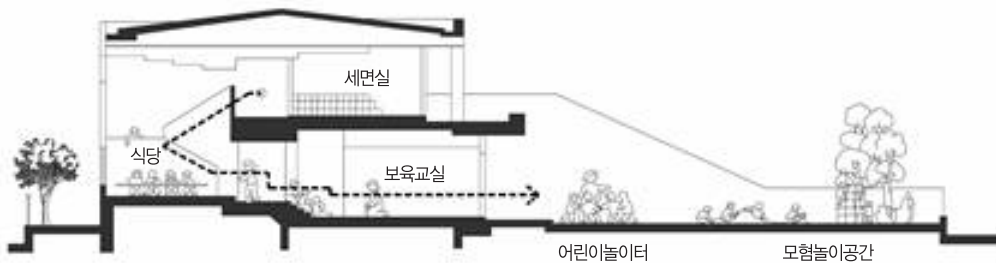
어린이 전용차량 승하차장 설치

- 유치원 차량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한 장소에 마련한다.
- 승하차장 인근에는 대기용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두도록 권장한다.

별도의 보육시설 마련

-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해당단지 및 인근단지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을 단지 내 구획된 부지에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지자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예시



●보육시설의 단면 계획도



노인 보호 시스템(데이케어센터) 도입 2.5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2019년 고령화 사회, 2027년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 공공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의 역할을 아파트 단지 내에 도입함으로써 노약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과 법적 장치마련에 사회 전체가 동참하고자 함이다.

목표

일정규모 이상 단지에서는 커뮤니티 센터 내부 또는 단지의 별도장소에 노인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노약자보호와 가정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배려하도록 한다.

규정

시설 기준

- 2,0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보호관리가 필요한 노약자를 위하여 10~30인 이상을 위한 케어센터를 단지 내 복합시설 또는 별도시설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센터 내에는 의료전문가(간호사, 간병인 등)가 상주하여야 하며 인근의 병원과 Hot-Line을 갖추도록 한다.
- 센터 내에는 위생설비와 주방설비, 물리치료를 겸한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취미실 등을 설치한다.
- 센터내부와 센터까지의 출입경로 전부 또는 일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운영 및 관리 방식

- 센터의 이용방식은 이용자출퇴근형과 임시요양형을 병행할 수 있고 단지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기타 운영방식과 운영비의 징수는 별도의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적용한다.
- 단지 주변 반경 500m 이내 또는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노인요양보험적용대상자의 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병원 등과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보호시설마련

-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해당단지 및 인근단지의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단지 내 구획된 부지에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지자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6 고품질 커뮤니티센터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최근 들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목적의 공간을 넘어 건강은 물론 내면적인 성숙을 위한 공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주거 문화의 배려를 위해 고품질의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표

단지 내 중심센터를 두어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공부방(방과 후 학교), 전자도서관, 이벤트 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근의 초등학교, 생활편의시설이나 생활지원시설과도 연계함으로써 고품질의 커뮤니티를 제공하고자 한다.

규정

커뮤니티센터 설치

- 2,0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시설 포함)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센터 내에는 30~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공부방과 전자도서관 등 학습관련 시설을 운영한다.
- 센터 내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운동시설 이외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라켓볼장, 요가실, 농구장 등의 시설을 1~2종 추가 설치한다.
- 센터 내부 또는 인근에 주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상설장터, 이벤트 마당 등)을 조성한다.
- 300세대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에는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법적의무시설 이외의 운동시설을 1~2종 추가 설치한다.

생활지원시설과의 연계성

- 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커뮤니티센터 내에 여성생활지원시스템 및 여성전문병원을 관리하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과의 연계성

-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초등학교, 대형생활편의시설, 병원, 공공청사, 파출소 등과 연계(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하여 활성화 한다.



여성안전귀가로 설치 3.1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현재 일어나는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 행위들은 점차 지능적이고 대담해지는 실정이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없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조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실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여성, 노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안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표

지하철입구,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의 교통시설이 있는 주요 도로변에서 단지 지정 출입구까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여성 운전자 포함)을 위해 안전한 귀가로를 선정하고 범죄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한다.

규정

여성안전귀가로의 확보

-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단지의 지정출입구까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안전귀가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 여성안전귀가로는 야간에 40~60LUX(바닥에서 85cm 높이의 측정값 : KS조도 기준)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여성안전귀가로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주요지점에 CCTV 등을 설치한다.
- 여성안전귀가로에 접속된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는 단지 경비실을 두어 보행안전과 연속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경비실의 창문은 최소 2면 이상 개방감 있는 창문을 설치하여 시야가 확보되도록 한다.
- 단지 내 주요시설 등에는 여성안전귀가로가 명기된 동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여성안전귀가로는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성안전귀가로의 연계성

- 여성안전귀가로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교통시설 및 주요 도로와 연계되어야 한다.
- 여성안전귀가로는 단지 내 여성친화보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예시



●여성안전귀가로의 설치 운영 예시도



3.2 야간 적정조도 유지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야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지 못하면 단지의 옥외 공간과 주동의 공용공간 등은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있어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된다. 이에 단지 내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범죄 가능성을 줄이며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목표

단지 내 여성친화보도 혹은 주동 출입구와 외부 휴식공간 등 주요 장소에서 야간을 대비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규정

여성친화보도 및 주요 외부공간의 조도확보	- 여성친화보도 및 여성안전 귀가로는 20~30m 이내마다 보행등을 설치하여 30~50LUX(바닥에서 85cm 높이의 측정값 : KS조도 기준)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 보행등의 위치선정과 조명형식 등을 결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보행공간이나 주요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세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주동 출입구 등 내부 공용공간의 조도확보	- 동별 출입구는 야간에 50LUX(바닥에서 85cm 높이의 측정값 : KS조도 기준) 이상이 되도록 조도를 확보한다. - 현관, 계단실, 복도는 야간에 100LUX(바닥에서 85cm 높이의 측정값 : KS조도 기준) 이상이 되도록 조도를 확보한다. - 현관, 계단실, 복도 등 필요한 부분에는 센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의 조도확보	지하주차장의 조도는 평균조도 100LUX이상 되도록 한다. 단, 여성우선주차구역은 女幸주차장기준인 130LUX 이상을 유지한다.
쓰레기처리장소의 조도확보	쓰레기처리장소는 야간에 50LUX(바닥에서 85cm 높이의 측정값 : KS조도 기준) 이상이 되도록 조도를 확보한다.



범죄예방 CCTV 설치 3.3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 노인, 어린이등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범죄 및 생활환경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목표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죄발생 가능지역을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규정

CCTV 모니터링 시스템

- 경비실,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통합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

-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각 주동출입구, 여성친화보도, 여성안전귀가로 및 쓰레기처리장소와 시각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한다.
- 주차장 등의 바닥면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주동출입구의 구조

-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각 주동출입구의 주동출입문(창호포함)은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홈오토시스템과 결합된 잠금장치 및 경비실과 연락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경비가 강화되도록 한다. (강화유리문 설치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삿짐 운반 시 지장이 없도록 한다)

비상벨 설치

- 지하주차장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시각의 사각지대에 비상벨을 설치
- 지하주차장은 주차면 길이방향으로 25m이내 마다 설치를 권장한다.

저층부(1~2층) 방범시스템

- 주동 저층부(1~2층) 및 최상층에는 방범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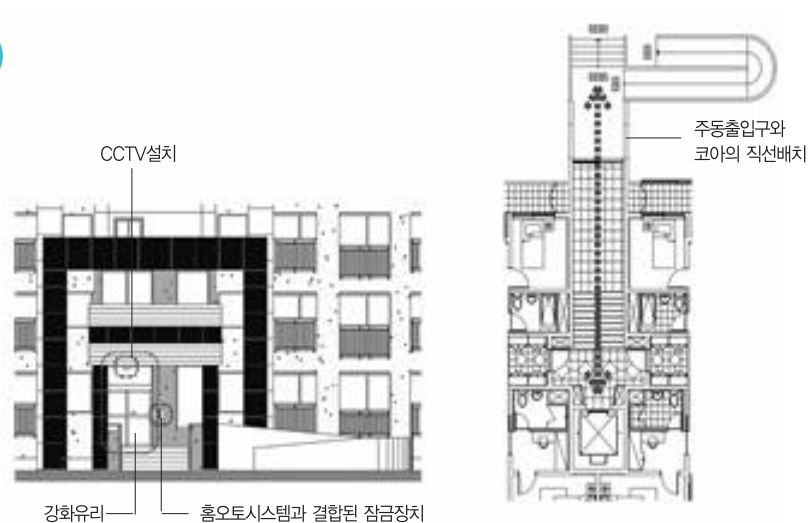
차량통제 시스템 설치

- 단지 주 · 부출입구에는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통제 등의 차량통제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3.3 범죄예방 CCTV 설치

예시



●주출입구의 범죄 예방 예시도





범죄예방설계(CPTED) 도입 3.4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범죄 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을 예측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범죄를 방지하는 범죄예방설계가 각광 받고 있다. 즉 환경설계를 통해 예견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선 방지 예방대책이 범죄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목표

아파트단지 조성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을 반영하고 사후관리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범죄예방설계(CPTED)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규정

자연적 감시 (시야확보)

- 단지 및 현관 주출입구 또는 여성친화보도 등의 주요시설물 배치 및 조경 식재 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반인들의 가시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예) 구불구불한 주동입구의 통로계획은 지양하고 홀, 로비까지의 보행거리를 단축하며 지하주차장에는 원형기둥 등을 사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야를 최대한 확보
- 예) 보 · 차도 경계부는 높이 50cm 이하의 조경수 식재를 권장하며 시야를 차단하는 교목식재를 최소화
- 예) 엘리베이터에 투시형 창문 설치
- 예) 지하주차장의 선큰 설치로 범죄행위에 대한 외부감시 기능 강화

자연적 통제

- 사람들이 보도, 도로, 조경 등을 통해 정해진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어렵게 하는 개폐 장치를 사용한다.
예) 원격감침장치나 주동 출입구(경비실과 인터폰 두기), 출입문 개폐장치(세대 내 도어 안전장치 포함) 등을 두어 외부인의 주동출입빈도를 축소

영역성 확보

- 범죄 범퍼 공간으로서 상징적 장애물이나 공적공간 및 준 공적공간을 두어 가상의 영역 및 단계별 점유영역을 확보한다.
예) 부대 복리시설 주변이나 주출입 주변은 높이 차를 두며 영역을 알리는 시설물(핸드레일, 식재 등) 설치

길거리의 눈 확보

- 이벤트, 휴게, 산책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외부 감시기능을 활성화 한다.
예) 주민이용시설과 경비실의 적정 배치
예) 대지의 복합적 사용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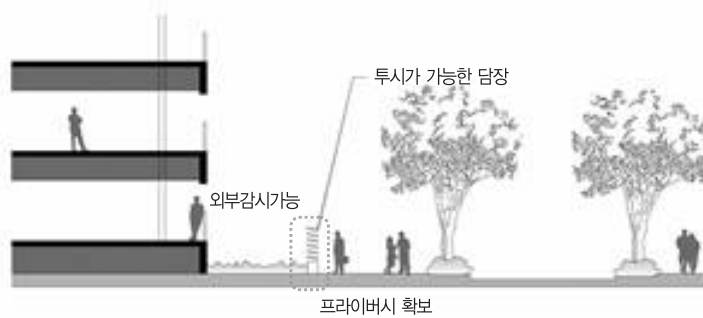


3.4 범죄예방설계(CPTED)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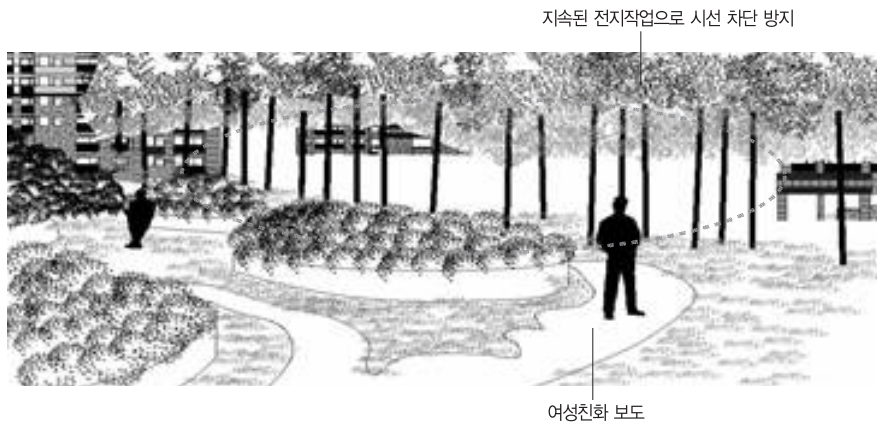
유지 및 관리의 원리

-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설계초기의 기능을 유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예) 로비,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 경비원의 순찰을 강화
예) CCTV 및 보안장비의 작동 상시 점검

예시



●자연적 감시 및 영역성 확보를 위한 담장 설치 예시도



●아파트 단지내 범죄 예방을 위한 조경 설치 예시도(시선의 차단 방지)



대피용 발코니 확보 3.5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최근 들어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를 보면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안전매트 설치 지연, 완강기 사용 중 추락 등이 목격된다. 늘어나는 주차차량과 긴급차량 동선 미확보 그리고 초고층화 되어가는 주거 상황에서 이젠 대안을 찾고자 한다.

목표

화재 및 위급 상황시 피난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대피용 발코니를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규정

대피용 발코니 설치

- 화재 및 위급 상황을 위하여 외기에 면한 대피용 발코니를 세대당 1개소(2세대 공용사용 금지, 2세대 인접 설치 권장), 최소면적은 순사용면적 2m² 이상(전용면적 60m² 이하에는 1m² 이상) 확보한다.

피난동선 확보 및 알림

- 발코니에 상하로 피난할 수 있는 내림식 피난 설비를 설치한다.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수평 피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 초고층, 블록형, 주상복합형 등의 아파트 내부에는 피난경로를 알리는 표지판을 엘리베이터 내부와 로비 등에 설치한다.
- 동별 소방차와 긴급차량의 정차위치(단지 내 도로에 직접표현도 가능) 및 이동경로를 알리는 안내판을 주동 입구 부근에 설치한다.

대피용 발코니 구조

- 대피용 발코니 내에는 수납장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대피용 발코니는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미닫이 창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를 적용한다.
- 대피용 발코니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 등 발코니 설치규정을 준수하고 발코니 확장 또는 커튼월 등으로 인하여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주동 대피소 설치

-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세대 내 대피용 발코니 이외에 주변현황 또는 주동형태에 의해 소방동선과 피난경로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 적정면적의 주동 대피소를 각층별 또는 주동의 적정위치(피난거리 50m 이내)에 분산 설치할 수 있다.
- 주동대피소는 주동 중층부 오픈스페이스나 외기에 면한 엘리베이터 코아 등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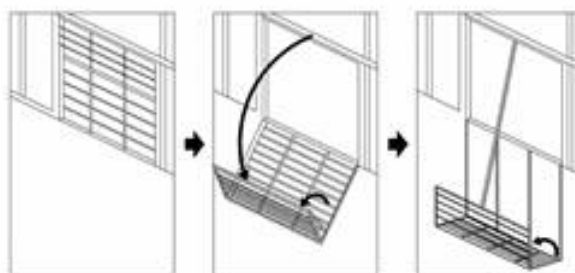


3.5 대피용 발코니 확보

예시



●주동 및 세대 대피용 발코니 계획 예시도



●대피용 발코니 대피 시설 설치 예시도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3.6

| 적용등급 권고 |

도입배경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살고 있는 곳이며 가사와 더불어 노유자 보호일을 맡고 있는 여성들은 재해 상황 시 특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홍수, 태풍, 지진, 화재, 기후변화 등 다양한 재해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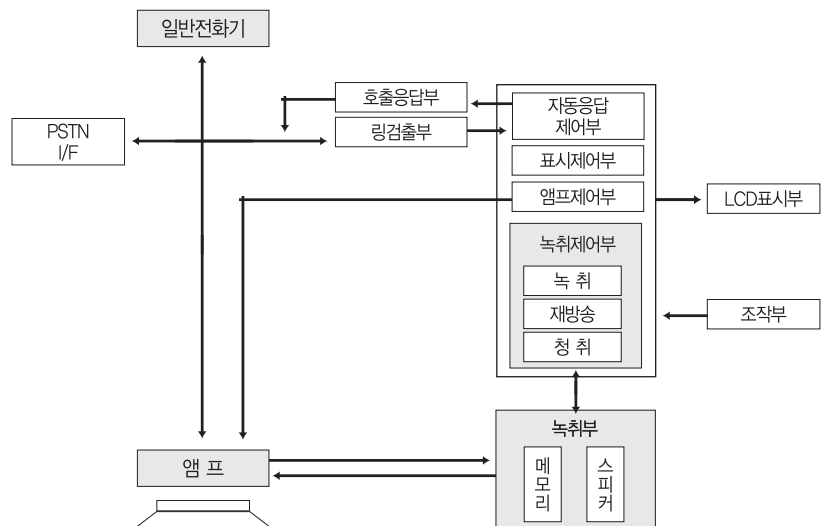
단지 내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및 건물 재난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규정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감지센서에 의해 온도, 침수, 지진, 화재 및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자동음성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재난 방지시스템을 말한다.
- 500세대의 이상의 단지에는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갖춘 종합상황실을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 운영한다. 단, U-city 구축에 의한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이 네트워킹 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세대 내에는 홈오토메이션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예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계통도



4.1 쾌적한 외부환경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거주편의의 개념은 세대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서도 크게 좌우된다. 특히 여성들은 단지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쾌적하고 섬세한 여성의 취향에 어울리는 외부환경을 마련하여 보다 여유있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목표

아파트의 외부공간에서 보다 쾌적하고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단지 내 거주 쾌적성을 증진시킨다.

규정

자연 친화형 조경 계획

- 아파트 외부공간 및 조경부분은 도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식재 및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예 바람길, 습지, 기존 유적지 등)
- 단지 내에는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수경공간(분수대, 실개천, 연못)을 조성할 수 있다.
- 법정이상의 휴게공간을 여성친화도 주변, 보행로 주변, 시설물 주변에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경관을 고려한 입면 계획

- 동별 출입구나 발코니 부분 등의 차별화된 계획으로 기능성을 높이고 성남갑아파트의 외관과는 차별화되도록 한다.
- 층별조닝을 고려한 저층부, 고층부, 중층부 계획수립 및 중간층 비우기 등을 활용한 양호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축벽부의 입면 녹화 또는 축벽부 개방 및 외부공간 꾸미기를 고려한다.
- 층별조닝을 고려한 색채계획으로 쾌적성을 높인다.

외부와의 소통

- 가로변 아파트 담장을 없애고 조경석과 꽃나무, 정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담장 설치 시 1.0m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단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 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 인접단지가 있을 때에는 단지의 담장을 없앴으로써 공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지간의 연계와 공간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예시



<기존지역>



<단지계획>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 계획의 수립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4.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세대내부와 주동내부에 보다 신중한 공간계획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쾌적도를 증진시키며 공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목표

세대내부와 주동내부 계획 시 쾌적도와 기능을 고려한 설계요소를 적용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주거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정

주민친화공간 조성

- 층별, 동선별로 엘리베이터홀이나 중간층 등을 활용한 주민친화 공용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 중정형 또는 블록형 배치 등의 경우에는 단지 앞마당에 주민친화공간이 마련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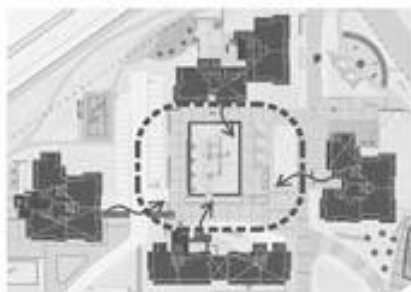
공용공간의 쾌적성 증진

- 주동 내 공용공간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어느 경우에도 은폐되지 않으며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세대 내부의 쾌적성 증진

- 세대내부는 양방향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대 내부에는 가급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며 Dark Zone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창고 등 수납공간 제외)

예시



● 단지 앞마당의 주민친화공간 조성 예시도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다이내믹한 입면 구성

● 중간층을 활용한 주민친화공간 조성 예시도



4.3 친환경 아파트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웰빙(Well-being)을 지향하는 삶이 화두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우리의 내외부 주거환경은 유해물질로부터 더 보호되며 인체에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

아파트의 내 외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규정

친환경 소재의 활용

- 부대 복리시설 중 경로당, 보육시설 등은 필히 환경저해요소가 적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아토피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창호 설치 시 알미늄 자재사용을 지양하고 PVC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는 새집증후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

-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친환경등급을 확보하도록 한다.
-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조성 4.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지난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들 역시 에너지 절감정책에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 절감에 관한 고려는 주거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목표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용경비를 줄일수 있는 유지관리비 절약형 아파트를 제 공하도록한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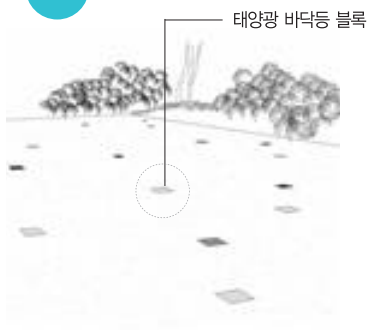
에너지 절약형 설비

- 부대복리시설과 공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설비에는 태양열, 빙축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 고효율 LED조명을 단지 내 보행로 등에 설치한다.
- 단지 내 대변기, 소변기 등은 (초)절수형 위생기구로 설치한다.
- 우수를 활용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한다.
- 단위세대 내에 법정이상의 단열조치와 단열성능이 있는 창호 설치를 권장한다.
- 전기, 가스 등에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세대별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 성능 등급 확보

-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확보하도록 한다.
- 건축물 에너지 인증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시



●태양광 바닥등 블록 설치 예시도



일반용 대변기 물의 사용량 13ℓ / 1회
절수용 대변기 물의 사용량 6ℓ / 1회
초절수용 대변기 물의 사용량 3~4ℓ / 1회

●변기 물사용량 예시도



4.5 친환경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자전거는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절약 등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 하면서 동시에 개인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녹색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주요 수단으로 각 광받고 있다.

목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외부의 자전거도로가 자연스럽게 단지입구로 유입되도록 하며 단지 내 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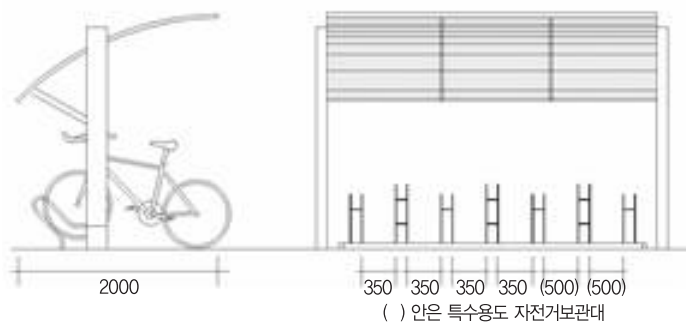
자전거도로의 설치

- 2,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단지 내 자전거도로는 차도와의 겸용이 가능하며 적정폭은 최소 2.5~3m 이상(차도너비 포함)으로 하고 기울기는 차도와 같은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는 도로에서 단지 내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 지상에 차도가 없는 단지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성친화도도와 분리 설치 한다.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 자전거보관소는 세대 당 0.3대 이상 비율로 확보한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에 공기주입기는 단지별 200세대 당 1개소 비율로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소는 우천을 대비하여 주동 출입구 근처에 지붕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주동의 피로티 공간 등을 활용한다.

예시



●공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예시도



●단지내 자전거 도로 설치 예시도



쓰레기 배출 시스템 설치 4.6

| 적용등급 선택 / 권고 |

도입배경

단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주부의 작업 피로도를 높이는 현재의 쓰레기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조성함은 물론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표

단위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 또는 탈수 후 분쇄하여 배출하며 일반 쓰레기는 합리적인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 건조 또는 건조 후 분쇄된 음식물을 처리할 경우 수거가 간편하고 잔여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 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공간을 단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청결유지

- 쓰레기의 배출 장소는 지상 또는 지하 한곳에서 편리하게 배출되도록 하며 청결함을 유지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 배출 장소 근처에는 청소가 용이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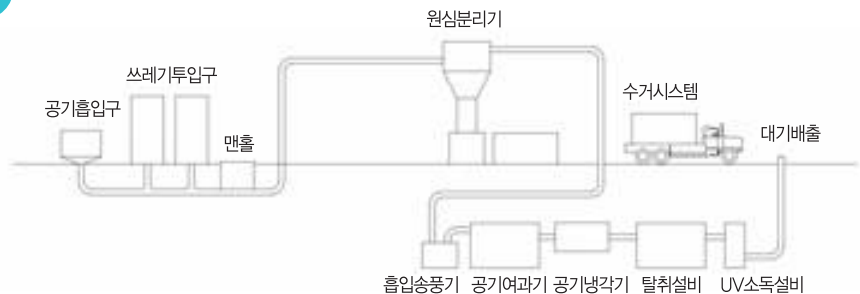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쓰레기의 배출 장소주변은 내용물의 운반과 야간투입 등을 고려하여 무장애 디자인을 도입한다.

일반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소를 두어 지붕 있는 구조로 하거나 뚜껑이 있는 기 성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재활용 보관시설은 150세대 당 8㎡ 이상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한다.
- 세대 내 또는 복도에 쓰레기투입구(Dust Chute)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단지 여건에 따라 주동이 나 단지 내에서 쓰레기처리장이나 집하시설로 직송되는 자동집하설비 또는 압송설비를 갖춘 것을 권장한다.

예시



●자동 크린넷 설비 예시도

참고자료

- (1)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 (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서울시/균형발전본부, 2009.
- (3) 반영운외 5인, 광역권 근린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08-12
- (4) 김종규외 3인, 시설기능에 따른 도시공원 분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2002-10
- (5) 장미선외 3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ffordable Elderly Housing 「Mendelsohn House」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Affordable Elderly Housing「Mendelsohn」of San Francisco,
USA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8.08
- (6) 박혜선, 오은진, 일본 고령자복합시설과 데이서비스센터의 복합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ypes of Multi-Functional Welfare Facilities and D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in Japan,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08
- (7) 대한주택공사, 저비용 주택 기술 개발,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도시재생사업단, 2009.4
- (8) 윤영호외 3인, 장수명 아파트의 개발방향과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6.4

관련법규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주차장내의 방법설비 설치 세부지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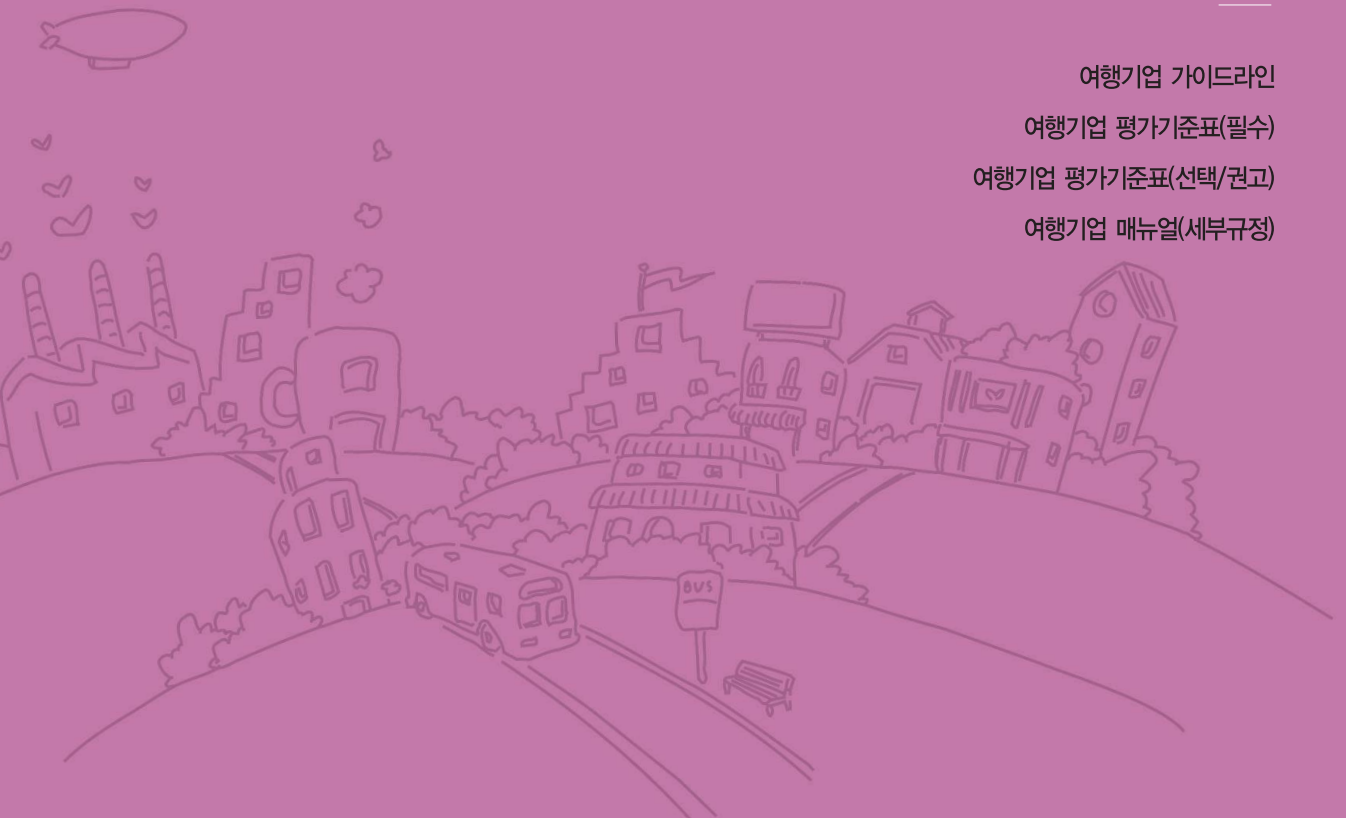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기업

여행기업 가이드라인

여행기업 평가기준표(필수)

여행기업 평가기준표(선택/권고)

여행기업 매뉴얼(세부규정)



여성이 행복한 기업 기본방향 및 키워드

| 기본방향 |

- 여성이 존중받는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 편안하면서도 성장가능한 안정적 고용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환경 추구

| 여행키워드 |

C.O.S.Y.女幸

여행의 인지성과 여성성에 관한 테마

시설부문

편 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기업

운영부문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Women 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기업

편의 및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근로환경 조성
- 여성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기업
-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직문화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기업

모성보호 및 돌봄

Motherhood(Maternity)
Protection & Care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기업

배려 및 모성보호, 돌봄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 여성 및 가족친화적 제도의 활용 편이성이 높은 기업
- 모성보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기업

안 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기업

고용안정

Employ Stabilization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기업

안전 및 고용안정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고용과 승진제도의 안정성, 공정성 확보
- 여성이 정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기업

여성의 능력개발

Women's Ability
Development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기업

쾌적 및 여성의 능력개발

-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여성의 능력이 개발되는 기업환경 조성
- 여성인재 육성에 힘쓰는 기업

여성이 행복한 기업(시설부문)

구분	가이드라인	등급
1.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기업	1. 가사지원센터 설치 또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지원 전용시설 설치	선택 필수/선택
2. 배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기업	1. 보육시설 및 수유실 설치 2. 복지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마련	필수 선택
3. 안전 Safety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기업	1. 보건실 설치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선택 선택
4. 쾌적 Amenity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기업	1. 주차장과 화장실의 쾌적성 증진 2. 작업장의 쾌적성 증진	선택 선택

여성이 행복한 기업

평가기준표(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
편의	1.2	여성지원 전용시설 설치	적정 규모의 여성휴게실과 탈의실 설치			필수	적정위치, 설비, 규모 등을 종합평가
배려	2.1	보육시설 및 수유실 설치	일정규모의 탁아 보육시설 설치(수유실 포함)			필수	기업간 연합, 혹은 위탁보육시설(보육비지원) 포함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여성이 행복한 기업

평가기준표(선택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편의	1.1	가사지원센터 설치 또는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지원센터 및 직원의 배치	전담센터 및 직원 배치	담당자 배치	담당자 미비	선택	외부용역 센터 포함
	1.2	여성지원 전용시설 설치	여성 분임 토의실 및 교육장 설치	쾌적한 내부환경의 시설확보	공간만이 라도 확보	미설치	선택	
배려	2.2	복지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마련	사내 취미실 및 동아리실 설치운영	공간배치 및 지원 프로그램	공간배치	미반영	선택	
			사내 헬스클럽 설치	설치		미설치	선택	
			문화행사관련 시설마련 (가족참여 가능)	문화프로그램 마련 및 시설 설치	문화프로 그램 마련	미반영	선택	
			여가시간 활용지원 프로그램 마련	반영		미반영	선택	
안전	3.1	보건실 설치	보건실 설치	보건실에 관리자 및 의료기구설치	보건실 설치	미반영	선택	
	3.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장 조도확보(눈부심 방지)	조도확보		미반영	선택	
			복도와 계단 및 지하공간 조도 및 시야확보	시야확보 및 은폐공간 CCTV설치	시야확보	미반영	선택	
			외부공간 은폐장소 없애기	시야확보 및 은폐공간 CCTV설치	시야확보	미반영	선택	
쾌적	4.1	주차장과 화장실의 쾌적성 증진	여성편의화장실의 설치	비고 규정 모두 만족	비고 규정 일부 만족	미반영	선택	-남녀분리설치 -세면기선반 -파우더룸설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주차장이 있는 경우)	비고 규정 모두 만족	비고 규정 일부 만족	미반영	선택	-여성우선 주차면20% -주차구역 시야확보 -주야간100lux이상 확보
	4.2	작업장의 쾌적성 증진 안내판 설치	친환경 자재 사용	사용		미반영	선택	
			쾌적한 적정 대기질 확보	기준준수		미반영	선택	
			절감형 설비 설치	에너지 절감형 설비사용		미반영	선택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1.1 가사지원 센터 또는 프로그램 운영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이 기업 내에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일과 가사의 양립일 것이다. 직장가 가정 두 곳에서의 작업량이 과중하기도 하지만 가사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여성의 업무 집중도는 높아지며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목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시간대에 겹치는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사지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규정

음식물, 세탁, 자녀
교육활동지원 등
업무 중 생활지원
서비스 운영

- 저녁 퇴근길에 원하는 식단의 요리재료를 대신 구매해 제공하거나, 완성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기업 내에서 세탁물을 위탁 세탁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주간동안의 자녀의 학교 방문이라든가 우체국, 동사무소 방문 업무 등 근무로 인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사업무 대행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
- 여성친화 기업에서는 여성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이 용이하면서도 효과적인 다양한 가사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사지원 센터에서는 다양한 다수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오류없이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갖추도록하며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가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인근의 여러 기업이 연합하여 가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사지원 전담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담 지원센터 및
직원의 배치

- 다수의 가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담당 직원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여성지원 전용시설 설치 1.2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인력을 보다 활용성이 높은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진 잠재성을 끌어내어 업무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무형의 자산으로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많은 부분에서 여성만이 가진 감수성과 섬세함 등은 기업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발휘되고 기업에 기여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

기업 내에서 여성들이 보다 많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여성 지원시설을 마련한다.

규정

적정 규모의 여성휴게실과 탈의실 설치

- 여성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 휴게실과 탈의실을 마련한다.
- 휴게실과 탈의실은 작업장 내 여성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직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필요시설과 사용도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 휴게실의 위치는 가급적 접근이 용이하고 주야간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한다.
- 휴게실과 탈의실은 여성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환기와 채광면에서 쾌적함이 확보되도록 한다.

여성 분임 토의실 및 교육장 설치

- 무미건조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작업환경과 차별화되어, 여성의 감수성이 배려받고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여성상담실 혹은 토의실 및 교육장을 마련한다.
- 실의 내부공간과 가구 등의 설비는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여성들이 작업환경과는 달리 여유있고 창의적인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고안한다.



2.1 보육시설 및 수유실 설치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육아는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기업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책임져주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낮은 출산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

근무시간 동안 육아를 전담하는 신뢰도 높은 보육시설 및 수유시설을 마련한다.

규정

일정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수유실 포함)

- 기업 내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한다.
-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지원·관리하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합하여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 보육시설의 자체설치나 특정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여 육아를 돕도록 한다.
- 보육시설에는 수유실을 마련하도록 한다.
- 여성직원들의 의사수렴기구를 마련하여 기업 내 보육시설의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복지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마련 2.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기업 내의 여러 복지정책은 개인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기업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여성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고양을 위하여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목표

여가활동을 비롯해 취미생활을 위한 사내 동아리 활동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규정

사내 취미실 및 동아리실 설치운영

- 취미실이나 사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장려한다.
- 기업에서는 취미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벤트 등의 장려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내 헬스클럽 설치

-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을 설치하여 근무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헬스클럽의 규모는 동시에 최소 5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행사관련 시설마련 (가족참여 가능)

-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참여가능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 주기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문화행사와 관련된 적정규모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체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시설과 연계하거나 외부 문화컨텐츠의 활용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특별히 다문화 가정이나 다국적 직원 구성이 많은 기업의 경우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권장한다.

여가시간 활용지원 프로그램

- 기업차원의 휴가지 시설확보나 휴가비용 지원 등, 휴가기간이나 주말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장한다.
- 업무의 성격이나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가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 마련을 권장한다.



3.1 보건실 설치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업 내 보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목표

적정규모의 보건실을 설치하여 사고와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규정

보건실 설치

- 업종을 고려하여 적정 성격의 보건실을 기업 내에 마련하도록 한다.
- 기업 규모에 따라 상비약을 갖춘 간단한 규모에서부터 상주 관리자와 의료시설이 있는 보건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적정규모를 확보하여 근무지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보건실은 반드시 인근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에게 있어 작업환경의 안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목표

여성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규정

복도와 계단실 및
지하공간 조도 및
시야확보

- 복도, 계단 등의 조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이동에 방해되는 물건 적치장소나 은폐공간이 없도록 한다.
- 접근이 가능한 지하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지하공간의 출입구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모든 곳에서 시야확보가 되도록 한다.

외부공간
은폐장소 없애기

- 조경지역을 포함한 기업시설의 외부공간에서 모든 시설물은 안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배치 한다.
- 외부공간 조성 시에는 시야가 차단되는 공간이 없도록 하고 야간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조도가 확보 되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내·외부공간에서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할 때에는 CCTV를 설치해 여성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되도록 한다.



4.1 주차장과 화장실의 쾌적성 증진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직장의 시설면에서 여성들에게 보다 친화적이고 편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직장 내에서 활용되는 필수시설을 여성친화적으로 마련하여 쾌적도를 높이고자 한다.

목표

화장실과 주차장에서 여성친화성을 확보하여 여성들의 직장 내 거주 만족도를 높인다.

규정

여성편의화장실의 설치

- 여행기업 내의 화장실은 반드시 여성과 남성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여성화장실은 여성편의 화장실로 조성한다.
- 여성편의 화장실에는 세면기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파우더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에 편의를 돕도록 한다.

여성우선 주차장 설치 (주차장이 있는 경우)

- 여행기업 내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면을 전체 주차구획의 20%이상 확보하여 여성의 편의를 돕도록 한다.
- 여성우선주차면은 시각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이나 조경 등으로부터 시야가 확보되도록 한다.
- 여성우선주차면 부근은 주야간 100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작업장의 쾌적성 증진 4.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작업장이나 사무실이 생산에 관계된 공간으로서만 조성될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유쾌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향후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목표

기업 내 업무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한다.

규정

친환경 자재 사용

- 시설을 마련할 때에는 가급적 친환경 소재의 것을 사용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다.

쾌적한 적정 대기질 확보

- 기업의 업무환경은 쾌적한 공기질을 가지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각 업종별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적정 공기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감형 설비 설치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 태양광 전지, 고효율 LED조명 등을 설치 권장한다.
- 대변기, 소변기 등을 초절수형 위생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 중수도 설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여성이 행복한 기업(운영부문)

구분	가이드라인	등급
1.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Women 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기업	1. 고충처리제도 운영 2. 여성문제 지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안전귀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필수 선택 선택 선택
2. 모성보호 및 돌봄 Motherhood(Maternity) Protection & Care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기업	1. 출산장려제도 마련 및 운영 2. 육아휴직제도 마련 및 운영 3.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4. 유연한 근무형태 운영	필수/선택 필수/선택 선택 선택
3. 고용안정 Employ Stabilization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기업	1. 안정된 여성고용 환경 조성 2. 여성의 장기근속 환경 조성 3. 안정된 여성 승진 환경 조성 4. 평등한 남녀 임금 보장	필수/선택 선택 필수/선택 선택
4. 여성의 능력개발 Women's Ability Development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기업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운영 2. 평등한 교육기회 및 교육훈련비 지급 3. 여성 네트워크제도 운영	선택 선택 선택

| 주석 |

※기업의 운영부분에서는 C.O.S.Y.女幸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 편의(Convenience)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Women 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로 그 의미를 확장하였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생활에서 부딪혔던 불편함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 배려(Consideration)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돌봄노동으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와 돌봄노동(Motherhood Protection & Care)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 여성의 꿈이 지켜지기 위해서는(안전, Safety)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고용과 승진제도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안정(Employ Stabilization)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여성의 감성에 초점을 맞춘 쾌적(Amenity)은 여성들이 관리직급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능력개발(Women's Ability Development)로 그 의미를 변형시켰다.

여성이 행복한 기업

평가기준표(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O	X	적용등급	비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1.1	고충처리제도 운영	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 실시			필수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성차별 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필수	
모성보호 및 돌봄	2.1	출산장려제도 마련 및 운영	산전후휴가제 운영			필수	- 산전후휴가제 신청자 모두가 90일을 사용한 경우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검토
	2.2	육아휴직제도 마련 및 운영	육아휴직제 규정 및 운영			필수	- 육아휴직제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검토
고용 안정	3.1	안정된 여성고용 환경 조성	여성고용율			필수	- 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 이상인 경우
	3.3	안정된 여성승진 환경 조성	관리직 여성비율			필수	- 산업별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이상인 경우
			여성임원확보			필수	- 여성임원 유무

● 필수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X 일 때 인증불가)



여성이 행복한 기업

평가기준표(선택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	1.2 여성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관련사진 첨부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관련프로그램 제출
		가족지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관련프로그램 제출
	1.3 안전귀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퇴근 전용 교통편 제공	출퇴근용 교통편 제공	늦은시간 퇴근교통편 제공	미반영	선택	
		야근전용 안전 콜택시 제공	운영		미운영	선택	
	1.4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정시 퇴근제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직원면담) 병행
		다양성 관리차원에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정성평가 (직원면담실시)
		솔증심의 접대문화 지양	적용		미적용	선택	정성평가 (직원면담실시)
모성 보호 및 돌봄	2.1 출산장려제도 마련 및 운영	출산장려제도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임산부 야근, 휴일근무 금지 규정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음	규정은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사례도 없음	선택	
	2.2 육아휴직제도 마련 및 운영	대체인력확보제도 운영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운영사례가 있음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사례가 없음	미운영	선택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검토
		육아휴직자 불이익방지대책 마련 및 운영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이의제기사례가 없음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이의제기사례가 있음	미운영	선택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검토하고 정성평가 병행(해당직원면담)
		가족휴가제 규정 및 운영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활용사례가 있음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으나 활용사례가 없음	미운영	선택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검토
	2.3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위탁교육 포함
	2.4 유연한 근무형태 운영	탄력근무제 운영	시차출근제 근무시간 단축제 반일휴가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탄력근무제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고 운영사례가 있음	관련규정이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운영사례가 없음	규정이 사규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운영사례도 없음	선택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검토

●선택 :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
 상-법규나 기준이상의 실현과 충분한 고려, 여성친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음
 중-기준만족이나 일부고려, 여성친화적 고려가 인지됨
 하-기준미달 혹은 고려없음, 전혀 느낄 수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적용 등급	비고
고용 안정	3.1 안정된 여성고용 환경 조성	여성고용 증가율	증가	동일	감소	선택	최근 3년간 실적 검토
		인사위원회 여성비율	20%이상	10%이상	10%미만	선택	
	3.2 여성의 장기근속 환경 조성	남녀 대비 근속율	100%	80%이상	80%미만	선택	최근 3년간 실적 검토
	3.3 안정된 여성승진 환경 조성	주요부서 내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 이상	평균 1/2 이상	평균 1/2이하	선택	산업별 평균 여성관리자비율 기준
		주요부서 내 여성비율	평균 이상	평균1/2 이상	평균 1/2이하	선택	산업별 평균 여성고용율기준
여성 능력 개발	4.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운영	여성인재육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수립하고 적극 장려	단기적으로 이루어짐	미수립	선택	
		여성의 교육훈련육구 조사	실시		미실시	선택	
		직급별 교육훈련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4.2 평등한 교육기회 및 교육훈련비 지급	평등한 교육훈련기회 부여	100%	80%이상	80%미만	선택	최근 3년간 교육 훈련기회 비교
		평등한 교육훈련비 지급	100%	80%이상	80%미만	선택	최근 3년간 교육 훈련비 비교
		비정규직 여성의 교육훈련 실시	실시		미실시	선택	
	4.3 여성 네트워크 제도 운영	멘토링제도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여성 커뮤니티 운영	운영		미운영	선택	



1.1 고충처리제도 운영

| 적용등급 필수 |

도입배경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상·직무상에서의 성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기구 및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기업 내 평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및 위원회를 마련한다.

규정

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 실시

- 전직원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의식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남녀고용평등의식, 성인지훈련프로그램 등 관련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성희롱·성차별 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 기업은 고용상·직무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고충이 발생했을 때 '고충처리위원'과 같이 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 별도의 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 15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

지표근거

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2에 의거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성희롱·성차별 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 만약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성지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1.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 직원은 직장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및 다른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부부 · 가정 · 자녀 등의 생활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내외에서 오는 정서적 스트레스 등은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직원의 스트레스, 건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 개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목표

여성 직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 재무적인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있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제도를 마련한다.

규정

상담실 운영

- 여성직원 가정문제,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 상담실 운영은 기업내부에서 오프라인 상담실이나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외부 상담실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둘 다 혼합해 운영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여성들이 기업내 ·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및 인간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한다.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여성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적 · 가정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표근거

여성지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의거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안전귀가 지원프로그램 마련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늦은 귀가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 중 하나이다.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여성 안전귀가 지원을 늘려가는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목표

출·퇴근시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환경을 제공한다.

규정

출·퇴근 전용 교통편 제공

- 여건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전용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근무지와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셔틀 교통편을 제공한다.
(귀가시간이 늦은 기업의 경우 특별 권장)

야근전용 안전 콜택시 제공

- 야근 등으로 여성 직원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야근전용 안전 콜택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1.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성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모든 조치들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다. 기업이 여성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 여성 개인의 행복지수 향상 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직장에서는 남성들 역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인사관리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목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다양성관리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규정

정시퇴근제 운영

- 관행적으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시퇴근제를 운영한다.

다양성 관리차원에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 성별을 비롯해 기업 내에 존재하는 인력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 인사관리담당자와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급자와 임원들이 성평등한 인사관리와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술중심의 접대문화 지양

- 술중심의 접대문화를 지양한다.

산출근거

정시퇴근제 운영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정시퇴근제 운영에 있어서는 3개월 간 직원들의 평균 야근시간을 확인해보고 이와 관련해 남녀 직원들과 면담을 시행한다.
- $$1인당 평균 야근시간 = \frac{\text{초과근무 총시간}}{\text{전체 직원수}}$$

다양성 관리차원에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 정성평가 : 기업으로부터 운영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판단

술중심의 접대문화 지양

- 정성평가 : 기업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 후 관계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판단

지표근거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조성은 기업 내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차별의 양상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간접차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2.1 출산장려제도 마련 및 운영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과 부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임신 및 출산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출산장려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표

임신한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한다.

규정

출산장려제도 마련

-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제도를 운영한다.
- 지원방식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출산용품을 지급하거나 축하금, 보육비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산전후휴가제 운영

- 법적으로 보장된 90일 산전후휴가를 회사 사규에 명시하고 해당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임산부 야근, 휴일근무 금지규정 및 운영

-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사규에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임신한 여성들에게 적용한다.

산출근거

산전후휴가제

사용기간(90일 기준)

- 최근 3년간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신청기간
- 여자직원 = $\frac{\text{실제 사용한 산전후휴가의 총기간(일수 기준)}}{\text{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수}}$

임산부 야근, 휴일근무 금지규정 및 운영

- 상 :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근무 금지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잘 활용되고 있다.
- 중 :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근무 금지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되는 경우가 적다.
- 하 :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근무 금지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근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출산장려제도 마련 및 운영 2.1

지표근거

산전후휴가제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4에 의거해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하는 여성근로자의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월135만원을 한도로 중소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기업은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1에 의거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의 배정에 있어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산부 야근, 휴일근무 금지규정 및 운영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해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주가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근거해 업주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같은 법률 제74조 4에 의거해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2.2 육아휴직제도 마련 및 운영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직장을 그만둔 30대 여성 대부분이 육아와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 그만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차원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 기업 나아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목표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자녀교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한다.

규정

육아휴직제도	• 법적으로 보장된 1년 육아휴직을 회사 사규에 명시하고 해당 여성들(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대체인력확보제도 운영	•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한 여성을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제도를 운영한다.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및 운영	•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 승진 및 근무평가, 업무배치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로의 전환이 보장된다는 것을 비롯해 승진 및 평가에서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규에 명시하고 이를 실행한다.
가족간호제도 운영	• 유아나 병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를 마련한다.

산출근거

대체인력확보제도 운영	• 상 : 대체인력조치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 중 : 대체인력조치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례가 없다. • 하 : 대체인력조치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활용한 사례도 없다.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및 운영	• 상 :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가 없다. • 중 :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가 없다. • 하 :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가 있다.
가족간호제도 운영	• 상 : 가족간호휴가제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 중 : 가족간호휴가제를 활용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이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 하 : 가족간호휴가제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활용한 사례도 없다.



육아휴직제도 마련 및 운영 2.2

지표근거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해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42.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및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족간호제도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의거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가족간호휴가제 도입비율은 6.8%에 불과하다.



2.3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육아휴직을 한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 업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에 복직 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된다면 복직 후 업무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여성들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메꾸고 직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규정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의 업무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한다.
- 회사의 직무 또는 제도, 조직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기업 내부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표근거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6에 의거해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연한 근무형태 운영 2.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유아를 두었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가능하다면 여성들은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여성들의 생산성과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한다.

규정

탄력근무제 운영

- 여성들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근제를 운영한다.
-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이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6시간 혹은 주당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제를 운영한다.
- 자녀의 학교방문이나 병원 진료 등 사적 용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의 반나절만 휴가를 내는 반일휴가제를 운영한다.
-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운영한다.

산출근거

탄력근무제

- 상 :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에 있다.
- 중 :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이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
- 하 :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사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3년간 이를 활용한 사례도 없다.

지표근거

육아기 단축근무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거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입양아 포함)를 가진 근로자,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 선택적,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은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시차출근제, 재택근로 등 탄력근무제 도입비율은 3.5~8.4%수준이다.



3.1 안정된 여성고용 환경 조성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인력의 채용은 기업의 여성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여성인력이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여성인력의 배치, 교육·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고용이 일정수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목표

여성의 채용과 고용의 안정성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채용단계부터 평등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킨다.

규정

여성고용율

- 전체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들의 평균 여성고용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여성고용율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 그 기준은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들의 여성근로자 고용율의 평균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별로 적용되는 여성고용율의 기준은 매년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기반해 변경될 예정이다).

여성고용 증가율

-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인력 중 여성채용 증가율이 나타나도록 한다.
- 신규채용에는 경력직, 신입직 모두 포함한다.

인사위원회 여성비율

- 인사, 고과평가위원회 중 여성의 참여를 20%이상 되도록 한다.
- 관련 위원회가 없을 경우 신입사원채용 면접시 여성면접관 비율을 20% 이상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여성비율은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들의 관리직 여성비율의 150%가 되도록 한다).

산출근거

여성고용비율

$$\frac{\text{전체 여성직원수}}{\text{전체 남녀직원수}} \times 100$$

여성고용 증가율

$$\frac{\text{전년도 신규 여성직원수}}{\text{금년도 신규 여성직원수}} \times 100$$

인사(심사)위원회 여성비율

$$\frac{\text{여성 심사위원수}}{\text{전체 심사위원수}} \times 100$$



안정된 여성고용 환경 조성 3.1

지표근거

여성고용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은 동일 산업과 비교해 여성고용 비율이 평균 60%에 미달할 경우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산업별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3.2%임(노동부, 2009)

산업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에 근거해 나온 연도별 노동부 지표에 따른다. [참고]
- 500인 이상 산업별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3.2%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17.7%, 제조업(식품) 44.8%, 중공업 10.9%, 건설업 8.6%, 숙박 및 음식점업 49.9%,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49.9%, 금융 및 보험업 35.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2%, 교육 서비스업 42.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5.2%
- 1000인 이상 기업의 산업별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5.1%임(노동부, 2009)
농업, 임업, 어업 광업 9.2%, 제조업(식품) 39.5%, 제조업(목재) 20.1%, 중공업 7.8%, 건설업 8.9%, 숙박 및 음식점업 58.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30.8%, 금융 및 보험업 4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8%, 교육서비스업 39.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8.4%

인사위원회 여성비율

-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관리직급 이상이기 때문에 2009년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이 14%라는 점을 감안해 인사위원회 여성비율을 20% 이상으로 산정하였다.



3.2 여성의 장기근속 환경 조성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30대에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는 점을 본다면 여성들의 고용률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유지율도 매우 중요하다. 어느정도 고용이 지속될 때 관리직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목표

여성의 고용기간이 일정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남녀 대비 근속률

- 최근 3년간 정규직 여성직원의 근속기간과 정규직 남성직원의 근속기간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산출근거

남녀 대비 근속기간
비율

$$\frac{\text{전체 정규직 여성직원의 근속기간(개월) / 정규직 여성직원수}}{\text{전체 정규직 남성직원의 근속기간(개월) / 정규직 남성직원수}} \times 100$$

지표근거

남녀 대비 근속률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1년으로 남성의 6.7년에 비하여 2.6년 짧다. 여성근로자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1~2년'이 30.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이 25.5%로 나타나 2년 이하가 56.2%로 절반을 넘는다. '3~4년'은 15.8%, '5~9년'이 17%, '10~14년'이 6.3%이며 '15년 이상' 근속년수는 4.6%에 불과하다.



안정된 여성 승진환경 조성 3.3

| 적용등급 필수 /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의 고용의 질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인력을 채용했어도 단순 사무직이나 특정 부서, 낮은 직급에만 배치시킨다면 여성인력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하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직급에서의 여성비율을 일정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관리직급 내 여성비율을 일정정도 확보한다.

규정

관리직 여성비율

- 매년 노동부가 발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들의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여성관리자란 과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자와 임원을 의미한다. 여성관리자비율은 산업별, 기업규모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그 기준은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들의 산업별 여성관리자비율의 평균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별로 적용되는 여성관리자비율의 기준은 매년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기반해 변경할 예정이다.

주요부서 내 여성 관리자 비율

-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등과 같은 주요부서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한다.
(주요부서에 대한 규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주요부서 내 여성비율

-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등과 같은 주요부서에 여성을 배치한다.
- 주요부서 내 여성비율은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의 산업별 여성고용을 평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한다.
(주요부서에 대한 규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여성임원확보

- 임원급에 여성을 배치한다.
(임원급이란 이사 이상의 직급을 의미한다.)

산출근거

여성관리자비율

$$\frac{\text{전체 여성관리자수}}{\text{전체 정규직 여성직원수}} \times 100$$

주요부서 내 여성비율

$$\frac{\text{주요부서의 여성직원수}}{\text{주요부서의 총 직원수}} \times 100$$



3.3 안정된 여성 승진환경 조성

지표근거

여성관리자비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에 근거해 나온 산업별 여성관리자 비율에 따른다.

[참고]

-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관리자 비율은 평균 13.6%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8%, 제조업(식료품) 9.3%, 중공업 1.5%, 건설업 8.1%, 숙박 및 음식점업 32.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9.1%, 금융 및 보험업 6.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6%, 교육 서비스업 2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9.2% (노동부, 2009)
- 1000인 이상 기업의 산업별 여성관리자 비율은 평균 14.8%임(노동부, 2009)
농업, 임업, 어업 광업 0.7%, 제조업(식료품) 7.3%, 제조업(목재) 1.8%, 중공업 2.5%, 건설업 1.7%, 숙박 및 음식점업 38.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14.7%, 금융 및 보험업 1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18.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3%

주요부서 내 여성비율

- 주요부서 내 여성비율은 산업별 여성고용률 평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평등한 남녀 임금 보장 3.4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근무여건은 호의적이지 않다. 여성들이 직장
에서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임금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낮다. 이는 여성들의 직장생활 행
복지수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노동의 경우 동일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최근 3년간 동일직무인 경우 동일직급 간에 남녀임금비율이 똑같도록 한다.
-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신입, 대리급, 과장급 1년차의 남녀직원의 임금을 비교한다.

산출근거

남녀대비 임금수준

$$\frac{\text{특정직급여성의 연간급여총액} / \text{특정직급의 여성직원수}}{\text{특정직급남성의 연간급여총액} / \text{특정직급의 남성직원수}} \times 100$$

지표근거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노
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동일 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며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같은 법률 제25조에 의거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2008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839천원으로 남성임금의 63.6% 수준으로 선진국의 75~90%에 비
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후반부터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등의 형태로 재취업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1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운영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성, 성장가능성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훈련제도는 관리직급 여성을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여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목표

직장 내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습조직,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한다.

규정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 중장기적인 여성인력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여성의 교육훈련요구
조사

- 여성의 교육훈련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요구조사를 실시한다.

직급별 교육훈련 운영

- 여성이 임원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때부터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산출근거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 상 : 중장기적 여성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중 :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여성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하 : 여성인력개발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

지표근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수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해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이에 여성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협의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를 보면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평등한 교육기회 및 교육훈련비 지급 4.2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명시적으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관리직으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기업 내에서 여성들의 성장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여성들의 직무배치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훈련참여 기회나 교육훈련비 지급을 확인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표

직장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참여 및 교육비 지급이 성별에 따라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규정

평등한 교육훈련참여	• 최근 3년간 남녀대비 교육훈련참여 횟수가 비슷하다. (신입, 대리급, 과장급 1년차 교육훈련 횟수 비교)
평등한 교육비 지급	• 최근 3년간 남녀대비 교육훈련비가 비슷하다. (신입, 대리급, 과장급 1년차 교육훈련 횟수 비교)
비정규직 여성의 교육훈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산출근거

남녀대비 교육훈련기회	$\frac{\text{전체 정규직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 횟수} / \text{정규직 여성근로자 수}}{\text{전체 정규직 남성의 교육훈련 참여 횟수} / \text{정규직 남성근로자 수}} \times 100$
남녀대비 교육훈련비	$\frac{\text{전체 정규직 여성의 교육훈련비 연간 총액} / \text{정규직 여성근로자 수}}{\text{전체 정규직 남성의 교육훈련비 연간 총액} / \text{정규직 남성근로자 수}} \times 100$

지표근거

평등한 교육훈련참여 및 교육비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같은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훈련부분에서 성차별을 해소하는 노력이 없다면 여성의 경력관리는 어렵고 이는 차후에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현재 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직근로자의 훈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28.4%이다.
---------------------	--



4.3 여성 네트워크제도 운영

| 적용등급 선택 |

도입배경

여성들이 기업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개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할모델의 부족, 협소한 기업내외의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조직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자신의 경력 개발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

여성 직원에게 장기적인 성장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규정

멘토링제도 운영

- 선배와 후배와의 만남을 제공하는 멘토링제도(mentoring)를 운영한다.
- 우수한 선배 여성 1명을 멘토로 선정해 후배 여성을 일대일 혹은 다수로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커뮤니티 운영

- 여성들 간의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 커뮤니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운영한다.

참고자료

- [1] 노동부. 2008.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2] 노동부. 2009.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도 50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여성고용비율 꾸준히 증가”.
노동부 보도자료(2009.9.10).
- [3] 노동부. 2008. 「취업과 여성」.
- [4]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연보」.
- [5] 안재희. 2007. 기업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진단지표 개발 연구. 여성인적자원연구 1(1). 여성 HRD연구센터

참고법령

〈시설부분〉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운영부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2009-정책개발-8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공원, 女幸아파트, 女幸기업 매뉴얼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이재림 ((주)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이순희 (안산1대학 건축설계과 부교수)

이주나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초빙객원교수)

안재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위원)

장명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문은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발행일 2009년 9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810-5101(대)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